

<논문>

《新昌令推斷日記》를 통해서 본 中宗代 謀逆事件의 發生背景과 詔獄節次의 實態*

타나카 토시미츠(田中俊光)**

목 차

- I. 머리말
- II. 《新昌令推斷日記》의 史料的 性格
 - 1. 作成背景
 - 2. 記錄形態
- III. 事件의 經緯와 推輸節次
 - 1. 事件의 發端
 - 2. 推官의 召集과 被告人 등의 拿來
 - 3. 被告人과 事干에 대한 訊問
 - 4. 照律과 量刑判斷
 - 5. 行刑 및 論賞
- IV. 中宗代 逆謀事件과 王權
- V. 맷음말

[국문 요약]

《신창령추단일기》는 중종 4년(1509) 10월 28일 및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역모사건 신문의 전말을 충재 권벌(1478~1548)이 기록한 일기이다. 본고는 이 사료를 중심으로 중종대 조목 절차 및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이 논문은 財團法人 日韓文化交流基金 訪韓 fellowship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toshi32@gmail.com)

역모사건의 고발은 승정원에서 이를 접수하여 바로 왕에게 전달되었다. 조록은 왕의 지휘 밑에서 운영되며, 추관의 선정 및 왕의 친문 여부 등을 왕 스스로가 결정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하는 담당관은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으나, 체포자의 인수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결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번갈아 실시되었고, 먼저 밀로만 물었는데(평문), 피고인이 정상을 숨긴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형신을 가하여(형문) 자백을 얻었다. 또, 복수의 피고인의 공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는 당사자끼리 대질시켜(면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신문이 일단락되면 반드시 공술내용이 틀림없음을 공술자에게서 다짐받았다. 신문을 통하여 진상이 밝혀졌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총괄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죄목과 법정형을 적시하는 절차를 거쳐 죄수에 대한 행형, 공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졌다. 신문은 공술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동 등도 살피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나, 자백을 중시한 당시 신문방법에서는 혐의가 농후한데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처 등 사건의 진정한 규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중종대는 크고 작은 역모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정국공신 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있었다. '반정'을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중종의 권위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 '새로운' 공신 자리를 노리고 종척 중 적당한 자를 내세워 쿠데타를 계획하였다.

중종은 잇따른 역모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고발한 자에게 후하게 보상하는 대책을 취하였고, 그러나 취약한 왕권 밑에서는 오히려 그 높은 보상을 노려 사건을 무고하는 자가 속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왕의 지휘 하에서 열린 역모사건 재판의 내용을 기록한 『신창령추단일기』에서는 단지 신창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일으킨 역모사건의 전밀뿐만 아니라, 반정 끝에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 공신을 선정한 대신들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당시 사회상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조록, 의금부, 형사절차, 왕권, 추국, 중종반정, 정국공신, 권벌

I . 머리말

조선시대의 범죄사건 罷理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지에서 수사 및 심리가 이루어졌다. 즉 서울에서는 형조, 지방에서는 수령 및 판찰사가 이를 관할하여 처리하였다. 그 중에서 死罪案件이나 진상규명이 어려운 疑獄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그 때까지 밝혀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갖추어 국왕에게 보고하여 국왕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렸다.

한편, 宗廟 · 社稷을 위협하는 謀反 · 大逆(謀逆)행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서 중대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국왕의 傳教에 의하여 주로 義禁府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심리가 이루어졌다.¹⁾ 이러한 국왕 주관으로 열리는 재판을 ‘詔獄’ 또는 ‘王獄’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조옥 절차에 관한 중점적 연구는 많지 않고,²⁾ 다만 조선후기에 편찬된 관련 法書 및 推案 · 鞏案과 같은 사건기록을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³⁾ 또, 이들 史料를 통하여 조옥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마치 조선 시대 全般에 걸쳐 유효하게 시행된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 本稿처럼 조선전기 조옥 절차를 살필 경우, 이러한 서술방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인용되는 『銀臺便攷』는 현종 8년(1842) 이후 현종대의 어느 시점에서 편찬된 것이고,⁴⁾ 『六典條例』는 고종 4년(1867)에 간행되었으며,⁵⁾ 『銀臺條例』 또한 고종 7년(1870)에 간행되었으므로⁶⁾ 이들 모두 19세기 중엽 이후 성립된 사료이기 때문이다. 14세기 말 조선 건국 이후 20세기 초 한말까지 조옥은 계속해서 열려왔고, “王敎를 받들어 축국하는 일을 판정”한 의금부와 “왕

1) 의금부의 前身인 巡禁司에서도 王명을 받아 조옥을 담당하였다(巡禁司上言, “本司係詔獄之任, 罪人囚放, 皆取上旨施行, 非他法司之比 …”)(『太宗實錄』 8年(1408) 正月 丁巳); 憲司上言, “巡禁司, 乃詔獄也…”(『太宗實錄』 11年(1411) 12月 甲辰); 義禁府啓, “本府非他法司之比, 卽古之詔獄也…”(『文宗實錄』 即位年(1450) 12月 戊戌) 등). 麗末鮮初 의금부 성립과정 및 王權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韓治勛, 「麗末鮮初 巡軍研究—麗初 巡檢制에서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에까지 미침—」, 『震擅學報』 22(震擅學會, 1961); 李相憲, 「義禁府考」, 『法史學研究』 4(韓國法史學會, 1977) 참조.

2) 宣祖代 조옥 중 犯兄한 柳淵獄事로 열린 三省交坐에 대해서는 鄭肯植, 「『柳淵傳』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16세기 형사절차의 일례—」, 『人道主義의 刑事法과 刑事政策』(又凡李壽成先生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星社, 2000). 이 논문은 李恒福이 선조 40년(1607)에 저술한 訟事小說인 『柳淵傳』의 소재가 된 유연옥사에서 삼성교좌의 절차 및 심리가 왜곡되어 유연이 처형된 배경, 그리고 유연의 죄가 雪冤된 경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綱常 윤리가 강조되어 欽恤思想에 기초한 법절차가 경시된 모습을 지적하였다.

3) 徐壹敎, 『朝鮮王朝刑事制度의 研究』(韓國法令編纂會, 1968), 269-283면; 吳甲均, 『朝鮮時代司法制度研究』(三英社, 1995), 43-56면(初出: 1983).

4) 吳洙彰, 「『銀臺便攷』解題」, 『銀臺便攷』 上(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7-9면.

5) 延甲洙, 「『六典條例』解題」, 『六典條例』 上(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5-7면.

6) 吳洙彰, 「『銀臺條例』解題」, 『兩銓便攷 銀臺條例』(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27-29면.

의 명령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한 승정원에서 규정한 조옥 절차도 우여곡절 끝에 현전하는 사료에 나타난 모습으로 진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존 연구의 서술방식은 조선전기 사료가 매우 근소한 탓도 있겠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서 제도가 변용·발전한다는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新昌令推斷日記》의 성격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료의 형태론적 접근방법으로 글자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도 취하도록 노력하였다. 제3장에서는 中宗代 推鞫 절차에 대하여 《신창령추단일기》를 중심 사료로 삼으면서 당시 발생한 유사한 逆謀事件과 비교하여 《경국대전》 등 國典에 나타나지 않는 官衙의 式例 탐구에 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중종대에 반역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배경에 대하여 왕권의 취약성 특히 功臣 冊錄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한 후, 그러한 문제가 신창령 역모사건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II. 《新昌令推斷日記》의 史料的 性格

1. 作成背景

《新昌令推斷日記》⁷⁾의 저자 沖齋 權機(권벌; 1478~1548)은 본관이 安東이고, 字는 仲虛, 號는 沖齋·萱亭·松亭이다. 전형적인 新進士類의 한 사람으로 연산군 2년(1496)에 진사시 합격, 중종 2년(1507)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檢閱, 승정원 注書 등을 거쳐 같은 왕 14년(1519)에 예조 참판이 되었으나, 같은 해 11월에 일어난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파직당하고 귀향하였다. 같은 왕 28년(1533)에 복직되어 인종 원년(1545)에 의정부 우찬성, 判義禁府事를 역임하였고, 같은 해 7월에 명종이 즉위하자 院相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에 일어난 乙

7) 《新昌令推斷日記》의 원문은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소재의 사진화상에 의하였다.

卯士禍로 衛社功臣에 冊錄되었으나 우찬성 鄭順朋 등의 탄핵으로 削勳되고 그 후 관직까지 폐면되었다. 그리고 명종 2년(1547) 소위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유배된 후, 이듬해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권별이 승정원 주서로 있었던 중종 4년(1509) 10월, 貞松守 李錫孫(석손) · 新昌令 李訢(흔) 부자 등이 주모자로 고발된 역모사건이 일어났다. 권별은 兼任 史官으로서 조옥에 참여하였는데,⁸⁾ 『신창령추단일기』는 이 때 조옥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신창령추단일기』는 현재 冲齋日記 6책(보물 제261호) 중 하나로, 나머지 5책은 『翰苑日記』(중종 3년, 예문관 겸열 및 대교 역임시) 2책, 『堂后日記』(중종 5년, 승정원 주서 재직시), 『承宣時日記』(중종 13년, 승정원 승지 재직시) 2책으로 모두 권별이 관직생활을 하였을 때 기록한 일기이다. 이들 일기는 『中宗實錄』을 편찬할 때 전거사료로 인용되어 기사화되었다.⁹⁾ 조선전기 조옥 관련 사료가 조선왕조실록 등 한정적인 가운데 『신창령추단일기』와 같은 실록편찬의 전거가 된 1차 사료의 존재는 중종대 조옥의 실태를 파악하는 점에서 매우 유력하고 귀중하다.

8) 史官은 항상 入侍하여 王과 관리들의 得失과 행동의 善惡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史草를 작성하고, 또한 각 관청의 시행사를 일기 형식으로 쓴 時政記를 작성한 관원으로 春秋館에 속하였다. 준주관에서는 時事의 기록을 전담한 記事官으로 藝文館 奉敎(정6품) 2명, 待敎(정8품) 2명, 檢閱(정9품) 4명 총 8명만을 전임사관으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타관으로 춘추직을 겸임하게 하였다. 기사관의 경우, 흥문관, 시장원, 승정원, 사간원, 육조, 승문원에서 총 20명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권별은 당시 승정원 주서에 있으면서 사관직을 겸임하였다[金慶洙, 『朝鮮時代의 史官研究』(國學資料院, 1998), 47-74면 및 115-168면]. 사관에 관한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金慶洙, 「조선 전기 史官과 實錄 編纂에 대한 연구－現況과 課題」『史學研究』 62(韓國史學會, 2001) 참조.

9) 金慶洙는 『翰苑日記』, 『堂后日記』 및 『承宣時日記』와 『중종실록』 기사의 同異點을 분석한 결과, 일부 잘못 기록되거나 전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으나 대략 그대로 기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들 자료가 『중종실록』 편찬시 중요한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음을 밝혔다(金慶洙, 앞의 책, 213-233면). 다만 김경수는 보물 제261호로 지정된 冲齋日記을 『신창령추단일기』를 제외한 5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사이트(www.cha.go.kr)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물 제261호는 『신창령추단일기』를 포함한 총 6책이다. 『신창령추단일기』와 『중종실록』 4년 10월 28일 및 29일 기사와 비교하여 보면 吏讀식 표현이 漢文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김경수가 살펴낸 일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창령추단일기』도 중종실록 기사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記錄形態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창령추단일기》는 중종 4년(1509) 10월 28일 및 29일 이틀간의 조옥 기록이다. 전체 1책 49쪽으로 草書體로 기재되었다. 곳곳에 문장을 말소한 선, 문장을 삽입한 표시, 誤字를 정정한 흔적 등이 있어 조옥 현장에서 보고 듣는 그대로 급하게 적은 인상을 받는다.

내용은 조옥이 열린 단서가 된 李末孫(말손)의 上變을 시작으로 추관의 소집과 피고인¹⁰⁾의 拿來(체포), 피고인에 대한 추국, 照律과 왕의 양형판단, 형 집행, 조옥 담당 관계자에 대한 論賞 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기록된 내용 흐름은 바로 당시 조옥이 진행된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추문은 번갈아 실시되었는데, 신창령 역모사건에서 열린 조옥은 왕이 친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관들은 추문이 일단락될 때마다 왕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자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刑訊을 가하거나 추가로 밝혀진 사건 연루자를 체포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왕에게 啓請하여 재가를 받았다. 피고인의 공술내용이 다른 피고인 또는 연루자의 공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늘날 대질신문과 같은 ‘面質’을 통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에 노력하였다.¹¹⁾

《신창령추단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추문기록이다. 각 피고인에 대한 추문 기록을 보면, “(피고인)曰, …”과 “推官曰, …”로 한 문으로 반복되는 부분과 “(피고인)白, 矢身亦, …” 등 吏讀를 사용하여 기록된 부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처음 신창령 이흔에 대하여 추문한 부분

10) ‘被告人’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조선시대의 범죄사건에서는 搜查단계와 公判단계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결수와 미결수의 구별도 없이 모두 罪人 또는 囚人이라고 불렀다[沈羲基, 『韓國法制史講義』(三英社, 1997), 221면 각주 3]. 沈羲기는 ‘피의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에서 ‘被疑’라는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被告’가 자주 사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상변에 의하여 혐의를 받아 신문을 받는 자에 대하여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1) 張鍾根, 「朝鮮時代의 調書인 供招의 作成方法과 搜查構造에 關하여(臨海君 璞의 逆謀事件을 中心으로)」, 『檢察』 110(大檢察廳, 1999), 215면.

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신창령 이흔을 신문하였다.

ⓐ 혼이 말하기를, “신은 어려서부터 다리가 절뚝거려 문정을 나가지 못하였는데 전년에 비로소 조금 나아졌습니다.”라고 하였다.

추관이 묻기를, “자네는 사냥하러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혼이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추관이 묻기를, “자네는 상산령 말손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혼이 말하기를, “상산령을 안 본 지 이미 두 달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추관이 묻기를, “자네 아버지가 자네와 내관 두 명으로 서산에서 돼지 사냥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어찌 똑바로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혼이 말하기를, “돼지 사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키운 매를 저는 서산에서 놓았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 추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흔이 돼지 사냥한 일은 이석손이 바로 공술하였으나 이흔은 이를 숨기므로 청컨대 형신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

ⓒ 이흔이 사뢰기를, 본인이 어려서부터 풍습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어느 곳에도 출입 못하시오며, 상산령을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사옵는 뜻으로 사립니다.

ⓓ 이흔이 다시 사뢰기를, 상산령이 종친·재상들이 모의한 일을 본인에게 같이 안다고 계달하옵셨거늘 본인은 상산령을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원래 정상을 은휘하니, 刑問을 실시하여 진상을 들추어내도록 추문하온 뜻으로 사립니다.

ⓔ 이흔이 다시 사뢰기를, 신장 30대를 맞았는데, 본인이 상산령을 한 번도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공술은 전에 공술과 더하거나 더는 바가 없음을 사립니다.¹²⁾

ⓐ는 추관이 이혼에게 신문하면 혼이 대답하는 문답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고, ⓑ는 똑바로 공술하지 않는 혼에 대하여 추관이 형신을 가할 것을 국왕에게 요청하여 재기를 받은 내용이다. 한편, ⓒ 및 ⓓ는 각각 “혼이 사뢰기를, …” 및 “혼이 다시 사뢰기를, …”로 시작하고 이하 혼 스스로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辨明하는 내용을 이두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의 뒷부분은 혼의 공술을 바탕으로 추관이 판단한 처분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는 혼에 대하여 訊杖 30대를 실시한 후에 혼이 다시 공술한 내용을 이두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와 ⓒ · ⓓ는 표기방법이 다르나 내용은 거의 같다. 한편, 《중종실록》의 해당 기사를 보면, ⓑ의 문답형식만 실려 있고 ⓒ · ⓓ와 같은 이두를 쓴 표현은 실려 있지 않다. ⓔ에 해당하는 기사는 “(이혼이) 신장 30대를 맞았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訊杖三十度, 不服).”라고 매우 간략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신창령추단일기》는 신창령 이혼 등의 역모사건을 권별이 사관의 입장에서 기록한 일기이다. 한편, 사관과는 별도로 사안 심리를 목적으로 問事郎官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推案’ 또는 ‘鞫案’이라고 하였다. 조선전기에 작성된 국안의 實物은 필자가 파악하는 한 한 건도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 17세기 이후의 추안 또는 국안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推案及鞫案》(奎15149)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들 사료 중에서 가급적 연대가 오래된 선조 34년(辛丑, 1601) 蘇德裕 등 역모사건의 추문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

12) 訊新昌令訴. ⓑ訴曰, “臣少蹇蹇,不出門庭,前年始少差.”問曰, “汝不爲山行乎?”曰, “無”曰, “汝不與常山令言乎?”曰, “吾不見常山令,已兩月矣.”曰, “汝父言汝與內官二人,獵猪于西山,何不直告?”曰, “非獵猪也.父有鷹子,吾放之于西山.”⑩啓曰, “訴之獵猪事,錫孫直招而訴諱之,請刑訊.”“依允.”⑪訴白, 矢身亦,自少風濕病以,腰下瘦弱,某處置,出入不得爲白乎於,常山令乙,自前自至今,一不相見爲白乎味白.⑫訴更白, 常山令乙,宗親·宰相等謀議事乙,矢身亦中同知,啓達爲白有去乙,矣段,常山令乙,一不相見是如,隱諱元情,刑問現推教味白.⑬訴更白, 訊杖三十度,矢身亦,常山令乙,一不相見辭緣段,前招內無加減白(《新昌令推斷日記》. 원기호 및 이두 부분의 밑줄 표시는 필자. 아래 인용문도 같음).

소덕유가 다시 사뢰기를, 본인은 각각 사람들이 역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개 인정하였으되, …(중략)…; 길운절을 영남주인으로 추대하여 맹주로 삼으려고 한 까닭은 아울러 똑바로 혐의에 대하여 공술하였다고 하기에는 미진하니, 刑問을 실시하여 진상을 들추어내도록 추문하옵신 일.

소덕유는 형문 1차로 신장 30대를 맞았는데, 전에 공술과 더하거나 더는 바가 없사온 일.¹³⁾

이 문장의 형식은 ④ 및 ⑤와 매우 유사하다. 이 사료에서 역모사건 피고인의 추문기록은 모두 문답형식이 아니라 이두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④, ⑤, ⑥처럼 이두를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술한 내용을 문사낭관이 “흔이 사뢰기를, …”라는 식으로 정리한 국안의 내용이고, 권별이 이를 『신창령추단일기』 안에 옮겨 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④처럼 추관과 피고인의 문답 형식으로 기재된 부분은 권별이 사관으로서 조옥 현장에서 보고 듣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신창령추단일기』에는 권별 스스로가 조옥 현장에서 문답 내용을 받아쓴 기록과 문사낭관이 작성한 국안을 謄寫한 기록이 併記되어 있는 것이다. 문답부분과 추관이 국왕에게 계문한 내용에 오자 정정이나 문장 말소의 흔적이 많은 데 비하여 국안 등사 부분은 거의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문사낭관이 작성한 국안은 이미 문장이 완성되어 있으므로 사관은 그대로 등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창령추단일기』 42쪽 맨 앞에서 43쪽 중단에 걸친 부분 즉 “이석손을 상산령과 面質하여 사뢰기를, …(錫孫乙, 常山令面質, 白, …)”로 시작하는 부분은 주위를 선으로 에워싸고 “이것은 마땅히 5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으로 여기에 들어갔다(此當在五丈, 誤在此.)”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두가 사용되어

13) 蘇德裕更白, 矣身, 各人等逆謀辭緣段, 大槩納段爲有乎矣, …(中략)…, 欲以吉云節爲嶺南主人, 將推戴爲盟主情由, 並只未盡直招辭緣, 刑問現推教事. 蘇德裕刑問一次, 訊杖三十度, 前招內無加減爲白乎事[『推案及鞫案』 卷1(韓國學文獻研究所 편, 亞細亞文化社, 1980), 53-54면].

있으므로 국안을 옮겨 쓴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이 원래 들어가야 하는 곳을 찾아보니, 이 일기의 5張(쪽수로는 9쪽. 제본할 때 한 장의 종이를 절반으로 접으로 1장은 1쪽과 2쪽, 2장은 3쪽과 4쪽이 됨) 중 이말손과 석손이 면질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부분 바로 뒤에 들어가야 함이 판명되었다. 여기서도 문답형식 부분과 국안을 등사한 부분의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다만 국안 내용이 문답형식보다 자세하다. 만약 권별 스스로가 국안의 문장을 작성하거나 혹은 문사낭관이 국안 내용을 낭독한 것을 듣고 일기에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잘못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관을 맡은 권별은 조옥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연동을 보고 듣는 그대로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다. 일기에 국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권별이 국안을 작성하거나 문사낭관이 낭독한 국안 내용을 듣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사낭관이 각 피고인에 대한 국안을 작성할 때마다 권별이 그 내용을 직접 보고 일기에 등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안 내용의 누락은 권별이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도중에 해당 부분의 등사를 빠뜨렸다가 뒤늦게 실수하였음을 알고, 그 때까지 기록한 부분 바로 뒤에 초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III. 事件의 經緯와 推鞫節次

1. 事件의 發端

중종 4년(1509) 10월 28일 巳時(오전 9시부터 11시), 우의정 成希顥(성희안), 雲水君 李孝誠, 莊城君 李貴丁(이귀정)이 상산령 이말손을 데리고 역모사건이 있음을 조정 高官들이 중대 안건을 의논하는 賓廳에서 發告(上變)하였다. 말손의 상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9월에 貞松守 李錫孫의 심부름꾼이 와서 이말손의 어머니를 賖身한 上言의 草

本을 빌려갔는데, 그 때 말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獮狗)도 함께 빌려주었다. 그 후부터 말손은 석손과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고, 석손이 말손을 불러 매일같이 “朴永文, 黃孟獻, 沈貞, 李公遇, 尹珣, 黃衡, 康允禧, 李嶢 등과 더불어 西山에서 돼지 사냥을 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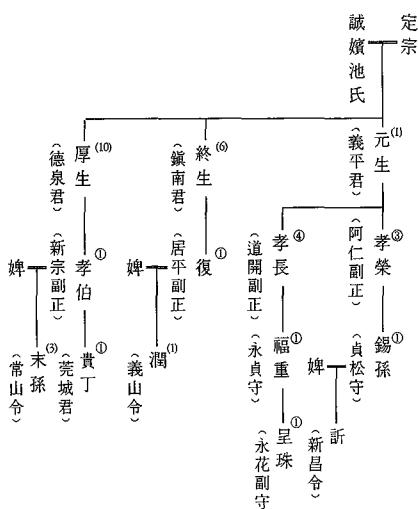
어느 날, 석손이 말손에게 “자네는 원종공신에 들어갔는가?”라고 물으므로 “안 들어갔다.”라고 답하니, 석손이 “자네는 昌山府院君과 從兄弟 사이인데도 안 들어갔다니 사람들이 昌山이 冷情하다고 하네. 사촌 사이인데 어찌 그렇게 박정한가?”라고 말하였다.

이번 달(10월) 24일, 석손 집에 가니, 석손의 아들 新昌令 李訢도 있었다. 석손이 “그믐 날에 사냥하러 간다.”라고 하므로 말손이 이흔에게 그 뜻을 물으니, 흔이 “冬至日 밤에 활을 잘 쏘는 자를 三公의 집에 각각 보내어 삼공이 궁궐에 나갈 때 射殺하고, 미리 사람을 鄉校洞 고개와 남산에 배치하고 삼공을 제거하였음을 알리는 봉화가 오르면 같이 궁궐 밖에 집결하여 국왕을 폐위시키고 完原君을 새로 왕으로 세우도록 박영문과 謀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듣고 말손은 바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역모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27일, 석손이 말손을 부르므로 집으로 갔으나 석손은 이미 義山令 李潤의 집으로 갔었다. 윤의 집 근처에서 석손과 윤의 행방을 물었더니 永貞守 李福重 집에 黃孟獻 및 尹珣 등과 같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복중 집으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말손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석손 집에 서간을 보냈으나 회답은 없고 다만 내일 다시 오라는 이야기였다.

상변 당일인 28일 龍漏(오전 4시경)에 말손이 석손 집에 가서 楊州에 있는 妻母를 뵙까 한다고 말하니, 석손이 “자네(말손)의 이름을 이미 써 놓았고 날이 촉박하니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석손이 “복이 없다. 완원군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하였다. 말손은 석손 집을 떠나 귀정 집에 가서 상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말손의 상변 내용에 의하면, 이석손 등은 동지 다음날 아침에 삼공(영의정 朴元宗(박원종), 좌의정 柳順汀(유순정), 우의정 성희안)이 궁궐에 출근하는 길에서 이들을 암살하고 중종을 폐위시켜 成宗과 淑儀 洪氏 사이에서 태어난 完



※○은 嫡出子, ()는 庶出子를 나타냄.

※기호 안의 수자는 출생 순서를 나타냄.

※訴은 『睿源錄』에서 삭제되어 있음.

〈그림 1〉 事件關係者 相關圖¹⁴⁾

原君(완원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쿠데타를 계획하였다. 貞松守 錫孫, 新昌令 訴, 義山令 潤(윤), 永貞守 福重(복중) 모두 守(정4품) 또는 令(정5품)에 봉하여 진 封號를 가진 宗班이다(<그림 1>). 게다가 이 쿠데타 계획에는 咸陽君 朴永文(박영문), 호조 참판 黃孟獻(황맹헌), 都摠管 尹珣(윤순) 등 高官이 관여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 모의 당시 완원군은 病苦에 시달려 있었다. 10월 21일에는 內醫가 看病하여 약을 갖추어 치료하였으나,¹⁵⁾ 결국 같은 달 26일에 사망하고 말았고, 쿠데타 계획은 무산되었다. 말손의 상변 내용에서는 이석손이 이 역모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말손은 당초 역모의 사실을 알면서도 계획을 자세히 몰랐다는 이유로 즉시 관에 밟고하지 않았다. 또한 말손은 혼자 관아에 가서 밟고하지 않고 먼저 귀정(말손의 嫡兄)과 효성에게 사건에 대하여 밟하고, 이들 세 명이 말손의 사촌 형에 해당하는 창산부원군 성희안(희안의 어머니는 덕천군 후생의 딸임) 집에 가서 사건을 알린 후 네 명이 빙청에 나가서 상변한 것이다.

역모사건을 알게 된 자는 이를 어디에 밟고하여야 하였을까? 지금까지 詞訟과 獄訟의 受訴官衙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¹⁶⁾ 조록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다.

14) 『朝鮮王朝睿源錄』(民昌文化社, 1992), 535-555, 875, 1152-1195면.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睿源錄』(奎8785)을 영인한 것이다.

15) 『中宗實錄』 4年(1509) 10月 己酉.

16) 사송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任相燦,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서울大學校 法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송의 提起는 『大明律』 刑律 訴訟

이 사건의 경우, 이말손은 먼저 우의정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고, 우의정에게 인솔되어 빈청에서 상변하고 있다. 같은 중종대에 열린 조옥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종 2년(1507) 8월에 河源守 繽(찬), 李顥(이과) 등이 일으킨 역모사건에서는 前羽林衛 盧永孫이 직접 승정원에서 상변하였고,¹⁷⁾ 같은 왕 5년(1510) 6월에 沙川守가 武士 약 180명 및 약간의 文士와 결탁하여 역모한다고 儒生 朴有齡이 허위사실을 상변하였을 때도 박유령이 직접 승정원에 나갔으며,¹⁸⁾ 같은 왕 17년(1522) 3월에 黃海道 康翎縣에 사는 尹石이 근처에 사는 李春茂가 국왕에 대하여 심하게 亂言하였다고 승정원에 와서 상변하고,¹⁹⁾ 같은 왕 26년(1531) 11월에 靈光에 사는 金錫璋, 宋錫賢 등이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상변한 正兵 宋鶴孫은 사건의 내용을 적은 글을 지참하여 승정원에 나갔다.²⁰⁾ 또한 상변자가 직접 승정원에 나갔는지 애매한 사례에서도 중종 20년(1525) 3월에 柳世昌·世榮 형제가 尹湯聘(윤탕빙) 등의 역모를 상변하려 경복궁 迎秋門에 왔다.²¹⁾ 기타 몇 건의 역모사건에서도 역시 승정원에서 상변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모에 해당되는 사건을 접수한 판아는 승정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일을 관장”²²⁾하는 판아이다. 조옥은 국왕의 전교로 운영된 만큼 국왕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맡은 승정원에서 상변을 접수한 것도 타당하겠다.²³⁾ 신창령 역모사건의 경우, 말

越訴條 및 告狀不受理條 그리고 《續六典》 규정에 따랐다고 한다(44면). 한편 육송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는 없고, 劉永竑, 「李朝刑事法理論의 展開」(서울大學校 法學碩士學位論文, 1960)에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육성도 《대명률》 형률 소송 월소조 및 고장불수리조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142면), 보다 구체적인 고증이 필요하다.

17) 『中宗實錄』 2年(1507) 8月 丁酉.

18) 『中宗實錄』 5年(1510) 6月 丁酉.

19) 『中宗實錄』 17年(1522) 3月 丙寅.

20) 『中宗實錄』 26年(1531) 11月 乙丑.

21) 『中宗實錄』 20年(1525) 3月 癸酉.

22)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承政院.

23) 정치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중종실록》 기사 중에서 정책이 제안·응답·채택된 건수를 중앙주요기관별로 통계 처리한 연구가 있다[박창진, 「中宗實錄을 통해서 본 政策參與機關의 權力關係研究」, 『韓國政治學會報』 31-2(韓國政治學會, 1997)]. 그러나 이 연구는 중종대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의 기준 또는 이유에 대하여 기묘사화 전후를 구분한 점

손은 빈청에서 상변하였다. 빈청은 승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말손의 상변은 바로 승정원을 통하여 국왕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2. 推官의 召集과 被告人 등의 拿來

상변 내용을 들은 왕은 의금부 郎廳 및 宣傳官과 兼司僕들로 하여금 이석손·흔 부자, 이윤, 이복중 등을 잡아오도록 전교를 내렸다. 또한 의금부 낭청 1명과 선전관 1명이 壯勇隊 10명을 거느리고 석손 집에 가서 역모의 증거 문서를 수색하여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영의정, 좌의정²⁴⁾ 및 의금부 당상관도 추국에 동참시키도록 요청한 성희안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왕은 “저번에 문사하였을 때 형방승지도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형방승지 이희맹이 지방에 있으니, 청컨대 우승지 손중돈을 입참하십시오(在前問事時, 刑房承旨參焉. 今刑房李希孟在外, 請以右承旨孫仲噉入參.)”라고 올린 都承旨 宋千喜(송천희)의 계문을 재가하였다. 다만 승정원 注書 권별이 왕명을 받아 손중돈의 행방을 찾았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史官으로서 권별과 潘碩評, 문사낭관으로서 奉常寺正 安彭壽가 조옥에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상변 당일인 28일, 소집된 관원이 경복궁 慶會樓 남쪽에 있는 慶會門에 모였고, 이석손, 이흔, 이윤, 이복중도 연행되어 왔다. 그 때 추관으로 임명된 관원은 영의정 박원종,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안, 判義禁府事 李季男(이계남), 知義禁府事 鄭光彌(정광필) 및 朴說(박설), 도승지 송천희이고, 문사낭관으

이외에 언급이 없는 등 의문점이 많다. 본고에서 이 연구를 참고한 이유는 정책유형 중 “체제부문”에 “반란 관련 항목(모반, 반란관련공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표-7>에 의하면, 중종대 전체를 통하여 해당 항목과 관련된 제안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臺諫, 그 다음이 의정부이며, 승정원은 채택건수가 8회, 응답건수 4회, 채택건수 0회로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승정원이 상변을 접수한 건수만으로도 8회를 훨씬 넘기 때문에 이 연구의 통계에는 오류가 있는 듯하다.

24) 《新昌令推斷日記》에서는 “右議政”으로 되어 있으나, 성희안이 우의정이므로 문액상 “左議政”的誤字일 것이다. 《中宗實錄》에도 “좌의정”으로 되어 있다.

25) 《中宗實錄》 4年(1509) 10月 丙辰.

로 봉상시정 안팽수, 사관으로 권별 및 반석평이다.

조옥을 열 때 피고인을 잡아오는 방법과 추국에 참여하는 인원을 소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추국에 참여할 인원은 승정원에서 啓稟하여 국왕의 승인을 얻는다. 현직 및 전직 대신과 의금부 당상관, 司憲府 및 司諫院의 여러 臺諫, 左右捕盜大將을 불러들인다. 문사낭관은 의금부에서 차출하는데 親鞫의 경우는 8명, 庭鞫은 6명, 推鞫은 4명으로 하되, 업무의 양에 따라 추가로 차출될 수 있었다. ‘친국’, ‘정국’, ‘추국’은 사건의 성질과 중대성에 따른 구분이며, 국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실심리를 주재한 친국·정국과 의금부재판인 추국 그리고 纲常犯을 추문한 三省推鞫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재판을 친국으로 할 것인지 혹은 정국으로 할 것인지는 국왕이 결정하였다.²⁶⁾

그러나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이들 규정의 정립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전기 중종대에도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선초기부터 이미 친국, 정국, 추국, 삼성추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옥 형태가 존재하였으나 그 명칭으로 조옥 형태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선조대 이후 특히 조선 후기부터인 듯하다. 또 조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는 “鞫廳” 또는 “推鞫廳”이라는 용어도 16세기 중엽 명종대부터 사료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조선 중종대의 조옥 절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몇 가지 사료는 참고가 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논할 수 없다. 조선전기 조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방법과 추국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연구는 현전하는 동시대 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26) 徐壹教, 앞의 책, 267-269면; 吳甲均, 앞의 책, 48-53면.

1) 推鞫 參與人員

다시 신창령 역모사건으로 돌아가서 추국 참여 인원을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삼정승, 의금부에서는 판사와 지사 2명, 승정원 도승지로 추관이 7명, 그리고 문사낭관 1명, 사관 2명으로 도합 10명이 추국에 참여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송천희의 말에 있듯이 예전에 추문할 때 형방승지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흔에 대한 첫째 신문이 끝난 후, 국왕과 추관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왕이 전교를 내리기를, “나의 얇은 심덕으로 자주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찌 이것이 보잘것없는 종친의 소위이겠는가. 그 중에 반드시 세상으로서 주도한 자가 있을 것이니, 신문을 늦출 수 없다. 또 의금부 낭청이 피고인 체포를 담당하면 반드시 남은 인원이 없어질 것이니, 문사낭관은 글을 잘 쓰는 자 두세 명을 뽑아 불러서 신문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회계하기를, “성상의 전교는 매우 지당하십니다. 문사낭청은 봉상시 정 안팎수가 이미 있는는데, 형조 정랑 권복도 불러서 신문시키도록 청합니다. 또 피고인과 연루된 사람은 의금부에 구금하도록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전교를 내리기를, “나는 모두 잡아와서 어지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 중에는 큰 공로가 있는 자도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결국은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의금부에 구금하게 하여라. 이번의 말이 이러한 무리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어찌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주도하겠는가. 반드시 세상으로 주도한 자가 있을 것이다. 빨리 신문하여라. 우승지 손중돈은 참여하여 신문을 맡아라.”라고 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도승지만으로 충분하니, 다른 승지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²⁷⁾

27) 傳曰, “以予德薄, 數有如此事, 且如此事. 豈此迷劣宗親所爲乎. 其中必有宰相爲之主者矣, 訊之不可稽緩. 且禁府郎廳罪人拿致, 必無餘員, 問事郎廳, 擇能書者二三, 召使問事可也.” 回啓曰, “上教甚當. 問事郎廳, 奉常正安彭壽已來矣, 刑曹正郎權福亦請招來問事. 罪人·事干, 請囚于

왕은 이 사건이 迷劣한 종친들만의 소위가 아니라 재신들이 핵심인물로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친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문사낭청이 안팎수 한 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금부 낭청은 피고인과 그 관련자를 체포하는 일로 인원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글을 잘 쓰는 자 2~3명을 뽑아 문사낭관을 맡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료들은 형조 정랑 權福을 소집하여 問事를 담당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왕은 보다 신속하게 추문하기 위하여 송천희의 요청대로 지방에 있는 형방승지 대신에 우승지 손중돈을 입참시켜 問事에 종사하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승들은 굳이 다른 승자를 入參시킬 필요는 없다고 진언하였다. 결국 손중돈은 추국에 소집되지 않았다. 이는 《신창령추단일기》 말미에는 추국에 종사한 관리들에게 그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 있게 論賞한 기록이 있고 안팎수와 권복만이 각각 虎皮 한 장씩을 하사받고 있으나 여기에 손중돈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중종대에 열린 다른 역모사건에서는 추국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중종 2년(1507) 8월에 이과 및 하원수 친 등이 일으킨 역모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왕이 親問하겠다고 하면서 신료에게 “과거에 왕이 친문한 예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政丞 등이 친문이 심히 가하다고 답하자, 왕은 “친문할 때 삼정승 및 의금부 당상관 전원과 문사낭관 2명, 주서·사관 등 12명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창산부원군과 교성군은 큰일에 있어서 무슨 괴험함이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참하지 말라.”²⁸⁾라고 하여 창산부원군과 교성군은 추국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교를 내렸다. 창산부원군 성희안이 이과와 사촌 관계이고 교성군 盧公弼이 尹龜壽와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추관을 避嫌한 것이다. 이과 등 역모사건의 추국은 왕이 참여한 가운데 경복궁 뒤

義禁府” 傳曰，“予非欲盡數拿來以致紊亂。其中有大功之人亦與焉。雖終有是非，姑令囚于禁府。此說雖自此輩出，然如此事，豈此人專主爲之。必有宰相主之者矣。其亟訊之。右承旨孫仲璥，其入參問事。” 政丞等啓曰，“都承旨足矣，不須以他承旨入參也”(《新昌令推斷日記》)。

28) 傳曰，“親問時，三政丞及禁府堂上專數 問事郎二員，注書，史官等十二人，同參可也。昌山府院君·交城君，於大事有何嫌乎？然人莫不疑焉，其勿入參”(《中宗實錄》 2年(1507) 8月 丁酉)。

에 있는 思政殿에서 열렸고, 영의정 柳洵,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의금부 당상관 閔孝曾 · 이계남 · 尹湯老, 도승지 洪景舟, 右副承旨 李惟清(이유청)과 문사낭관으로 內資寺僉正 申永洪, 호조 좌랑 金良彦, 注書 姜洪, 사관으로 權希孟이 추국 관계자로 입시하였다.²⁹⁾

중종 8년(1513) 10월에 일어난 박영문 및 辛允武(신윤무)의 역모사건도 왕이 친문하였다. 靖國功臣一等이었던 박영문과 신윤무가 쿠데타를 계획하였다는 變告에 조정은 큰 충격을 받았다. 추국이 사정전 처마 밑에서 열렸고, 좌의정 宋軼, 우의정 정광필, 예조 판서 金應箕, 좌찬성 李蓀, 都承旨 李思鈞, 형방승지 金克愬, 大司憲 박열, 司諫 申鎰(신상)을 추관으로, 司僕寺正 尹希仁 및 繕工監正 柳雲을 문사낭관으로, 注書 李挺豪, 藝文館檢閱 朴命孫을 사관으로 삼았다.³⁰⁾

중종 20년(1525) 3월에 윤탕병 등의 역모사건에서도 역시 왕이 조옥에서 친문하였다. 추국은 사정전 입구 밖에서 열렸고, 영의정 南袞, 좌의정 이유청, 판의금부사 張順孫, 지의금부사 尹殷輔, 승정원 도승지 金希壽, 좌승지 金克愬와 記事官으로 朴洪麟 · 金馮 · 周世鵬, 問事官으로 舍人 沈思遜, 檢詳 許寬이 입시하였다.³¹⁾

위 4건의 역모사건의 추국에서 각각 동원된 관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中宗代 主된 詔獄에서 推鞫에 參與한 人員

		李顥等逆謀事件 (中宗2年)	新昌令等逆謀事件 (中宗4年)	朴永文等逆謀事件 (中宗8年)	尹湯聘等逆謀事件 (中宗20年)
國王	親問	委有司	親問	親問	
推官	▲ 領議政 柳洵 ▲ 左議政 朴元宗		▲ 領議政 朴元宗 ▲ 左議政 柳順汀		△ 領議政 南袞 △ 左議政 李惟清

29) 《中宗實錄》 2年(1507) 8月 丁酉.

30) 《中宗實錄》 8年(1513) 10月 丙辰.

31) 《中宗實錄》 20年(1525) 3月 癸酉.

	▲ 右議政 柳順汀 △ 判義禁府事 閔孝曾 △ 判義禁府事 李季男 △ 判義禁府事 尹湯老 △ 都承旨 洪景舟 △ 右副承旨 李惟清	▲ 右議政 成希顏 △ 判義禁府事 李季男 △ 知義禁府事 鄭光弼 △ 知義禁府事 朴說 △ 都承旨 宋千喜	▲ 左贊成 李蓀 △ �蹊曹判書 金應箕 △ 司憲府大司憲 朴說 △ 司諫院司諫 申鎬 △ 都承旨 李思鈞 △ 刑房承旨 金克福	△ 判義禁府事 張順孫 △ 知義禁府事 尹殷輔 △ 都承旨 金希壽 △ 左承旨 金克愷
問事郎官	3명	2명	2명	2명
史官	1명	2명	2명	3명

※ 中宗反正 主導者 및 靖國功臣은 ▲, 非功臣은 △로 표시하였음.

<표 1>을 보면 주로 의정부 삼정승, 의금부 당상관, 도승지와 다른 승정원 당상관 1명으로 추관이 구성되고, 문사낭관 및 사관이 각각 2,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박영문 역모사건처럼 의금부 관원이 참여하지 않고 臺諫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 조옥에서는 사헌부 및 사간원의 여러 관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표 1>에서는 대간이 참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중종반정의 공신이었던 대신들과 주로 非功臣者로 구성된 대간³²⁾ 간에 대립관계가 있었던 점,³³⁾ 그리고 조옥이 국왕의 주도 하에서 운영된 점 등을 염두에 두면, 대간들이 조옥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당시 조옥에 대간을 참여 시킨다는 인식이 왕 및 대신에게 결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좌의정)송질 등에게 전교를 내리기를, “저번에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 양사(사헌부와 사간원)의 장관을 추국에 참여시켰다. 지금 대사헌과 대사간이 마침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니, 그 이하 대간 중에서 명망 있는 자를 불러서 추국에 참여시키는 것

32) 李秉休, 『朝鮮前期 繖湖土林派 研究』(一潮閣, 1984), 66-70면.

33) 朴榮圭, 「朝鮮中宗初에 있어서의 大臣과 臺諫의 對立」, 『論文集』 5(慶北大學校, 1962), 382-387면.

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송질 등이 회계하기를, “조종 때에도 비상한 정변이 있었으나, 그때 대간이 추국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신은 잘 모릅니다. 저번에 辛服義 사건 때에는 지방에서 추문하였기 때문에 대간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국가의 중대사는 성상께서 친문하시고 사관이 그것을 기록하는데, 비록 대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탄핵할 일이 있겠습니까. 대간의 참여 여부는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전교를 내리기를, “조종조의 일은 나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저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대간을 추국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홍문관에서 말하였다. 또 옛 역사에 ‘대간이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삼성교좌하는 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었을 뿐이다.”³⁴⁾

이 기사는 박영문·신윤무 역모사건에서 추관을 소집할 때 왕과 좌의정 송질이 대간의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의논한 내용이다. 사태가 중대하기 때문에 왕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장관을 참여시키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므로 장관 이하 판원 중에서 顯名한 자를 소집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송질은 祖宗 때부터 비상한 정변이 있었으나 대간이 추국에 참여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전에 辛服義(신복의) 사건에서는 지방에서 추문하였기 때문에 대간이 참여하였으나, 이번 사건에서 대간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왕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回啓하였다. 왕은 “조종 치세의 일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각각 사헌부에서는 대사헌, 사간원에서는 사간이 참여하였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중종과 좌의정은 조목에 대간을 참여시키는 것을 조종에

34) 傳于宋軼等曰, “前日有如此重大之事, 令兩司長官參鞫。今大司憲·大司諫適有故, 以下臺諫顯名者, 招致參鞫何如?”宋軼等回啓曰, “祖宗朝亦有非常之變, 其時臺諫參鞫與否, 臣未詳知。前日辛服義在外推問, 故臺諫與焉。然臣意此國家重事, 上親問而史官書之, 雖有臺諫, 豈有彈劾之事乎。臺諫參否, 當自上裁。”傳曰, “祖宗朝事, 予亦未詳知。但前此有如此事, 而不使臺諫參鞫未便事, 弘文館言之。且於古史有臺諫雜治之語, 此與三省交坐之事相類, 故問之耳”(《中宗實錄》8年(1513) 10月 丙辰).

서 계승되어 온 式例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박영문 등 역모사건의 12년 후에 일어난 윤탕병 등 역모사건에서도 대간이 추관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보아도 박영문 등 역모사건에서 대간을 참여시킨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왕이 명령한 일시적 權宜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옥에서는 국왕이 친문할 경우와 추관에게 맡기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결정되었을까? 《경국대전》 등 법서에서는 이를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중종이 司諫과 함께 친문에 대하여 의논한 기록이 있어 참고가 된다.

사간 홍언필이 말하기를, “사람이 고변을 올려도 반드시 친히 국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친문할지 혹은 추관에게 맡길지는 사건의 경증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일일이 친문할 필요가 있겠는가.”³⁵⁾

왕의 “친문할지 추관에게 맡길지는 사건의 경증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통하여 조옥에서 왕의 친문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국왕이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조옥에서 어떤 관원을 추관으로 소집하여 참여시키는지에 대한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었으나 해당 관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융통성 있게 결정되었고, 국왕이 조옥에서 친문하는지 여부도 사안의 경증을 감안하여 국왕 스스로가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被告人의 拿來

피고인의 체포에 관한 규정은 기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

35) 司諫洪彥弼曰, “人有上變告, 不必親問也.” 上曰, “或親問, 或委有司, 因其事之輕重而處之, 豈必事事親問哉”(《中宗實錄》 11年(1516) 12月 戊申).

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무릇 죄인은 감사·병사·수사 및 대역죄·강상죄를 범한 죄인은 낭청이 잡아오되,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당상관 이상은 서리가 잡아오고, 당하관 이하는 나장이 잡아온다.³⁶⁾

이 사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감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인 경우 및 大逆罪·綱常罪를 범한 경우는 의금부 낭청이 잡아오고, ② 당상관 중 ①에 해당되지 않은 피고인은 서리가 잡아오며, ③ 당하관 중 ①에 해당되지 않은 피고인은 나장이 잡아오는 식으로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체포를 담당하는 관리를 구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창령추단일기》에서는 의금부 낭청, 선전관 및 겸사복으로 하여금 이석손·이흔·이윤·이복중 기타 사건 연루자까지 잡아오게 하고 있다. 선전관과 겸사복은 《경국대전》에서는 番次로 근무하는 체아직으로 정원은 각각 선전관이 8명, 겸사복이 50명이었다.³⁷⁾ 선전관은 국왕을 侍衛하면서 국왕이 내리는 전교를 전달하는 무관이고, 겸사복은 국왕의 시위와 왕궁 警護를 맡은 병사이므로 이들 모두 국왕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피고인과 기타 사건 연루자를 체포할 때 항상 낭청, 선전관 및 겸사복을 동원하도록 한 식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 중종 20년 (1525) 3월에 윤탕빙 등이 일으킨 역모사건에서 윤탕빙을 체포할 때 탕빙 등이 사납고 날쌔다는 이유로 선전관 1명마다 각각 군사 15명씩을 거느려 잡아오도록 하고 선전관을 중심으로 체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³⁸⁾

36) 一, 凡罪人, 監兵水使及犯逆綱常罪人則郎廳拿來, 堂上以上, 書吏拿來. 堂下以下, 羅將拿來[《金吾憲錄》(단, 內題는 “金吾廳憲”이라고 되어 있음) 拿押條]. 『各司謄錄』 72(國史編纂委員會, 1994), 3-4면에 의하면, 이 책은 처음 朴鳴陽에 의하여 英祖 20년(1744)에 편찬된 후 19세기 전반에 수차례 증보되었다. 현재 미국 Berkeley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육전조례》 권9 刑典 義禁府 總例에는 “凡罪人, 監兵水使及犯逆綱常罪人則郎廳拿來”로 규정되어 있다.

37) 《經國大典》 卷4 兵典 番次都目.

조선전기 조옥에서 피고인 체포를 담당한 관리는 성종대 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종 25년(1494) 2월에 野人 火刺溫兀狹哈 將只大가 咸興에서 나장 韓義江을 칼로 찔러 빙사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다. 조정에서는 將只大를 잡아 서울로 옮겨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지의금부사 朴健이 “평상시 피고인을 잡아올 때 당상관이면 낭청을 보내고 당하관이면 나장을 보내는 것이例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³⁹⁾ 그러므로 조선후기 사료에 나오는 규정과 비슷하게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체포를 담당하는 관리를 달리하는 규정이 식례로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조옥에서 피고인과 그 연루자를 체포하여 연행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추관을 선정하는 방식처럼 식례로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분, 체포의 난이도 그리고 체포자의 인수 등을 감안하여 약간 변동될 수 있었다.

3. 被告人과 事干에 대한 訊問

1) 訊問의 類型과 供述錄取

『신창령추단일기』에 수록된 추국기록을 보면, 추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각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신문하는 ‘推問’이고, 또 하나는 피고인의 공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당사자끼리 對質하여 신문하는 ‘面質’이다.

추문은 다시 ‘平問’과 ‘刑問’으로 나누어진다. 평문은 추관이 말로만 질문하는 신문방법이고, 형문은 拷訊 즉 訊杖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는 신문방법이다(<그림 2>). 형문을 실시하기 전에는 제2장 제2항에서 인용한 ⑥처럼 추관이 “(피



38) 『中宗實錄』 20年(1525) 3月 癸酉.

39) 『成宗實錄』 25年(1494) 2月 癸酉.

고인이) 진상을 숨겨 똑바로 공술하지 않으므로 청컨대 형신하옵소서.”라고 국왕에게 재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 번의 형문에서 枉打할 수 있는 회수도 30대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형문의 제한 규정은 일반 육송의 형문과 같이 《경국대전》推斷條⁴⁰에 의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 녹취한 공술내용은 재판 심리의 증빙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녹취한 공술내용을 재판 심리의 증빙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녹취된 공술내용이 틀림없이 피고인의 공술과 동일하다는 보증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막판에 국안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공술을 翻覆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공술녹취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전기 조록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신창령추단일기》 중 이말손과 이석손의 면질한 부분에는 먼저 석손과 말손 서로의 응답과 추관의 질문이 문답형식으로 기록된 다음에 이두를 사용한 국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나온다.

이석손이 다짐(傍音)을 확인한 후, 나장으로 하여금 석손이 (조록 현장에서) 뇌장하는 것을 돋게 하였다.⁴¹⁾

다짐은 ‘供稱’,⁴²⁾ ‘供辭’의 조선말(方言供辭, 謂之傍音)로⁴³⁾ 어떤 사실이 틀림없음을 맹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짐이라는 용어는 토지나 노비 등을 둘러싼 사송에서 始訟⁴⁴⁾ 및 판결 승복⁴⁵⁾ 때 흔히 사용되고, 패소자가 이행을 맹서한 내용의 문서도 현존하는데,⁴⁶⁾ 석손이 다짐을 보았다는 기사를 통하여 조록

40) 凡拷訊<訊杖, 長三尺三寸, 上一尺三寸則圓徑七分, 下二尺則廣八分·厚二分, <用營造尺> 以下端打膝下, 不至騰脇. 一次無過三十度.>, 取旨仍行(《經國大典》卷5 刑典 推斷).

41) 錫孫傍音見後, 令羅丘扶錫孫出(《新昌令推斷日記》).

42) 《明宗實錄》21年(1566) 6月 壬午.

43) 《肅宗實錄》45年(1719) 8月 丙辰.

44) 任相嬪, 앞의 글, 52-53면.

45) 朴秉濠, 『韓國法制史攷』(法文社, 1974), 287면.

46) 崔承熙, 『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知識產業社, 2003), 326-328면.

에서도 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옥의 경우 피고자가 공술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선서한 것을 말한다. 조옥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문을 담당한 문사낭관이 피고자의 공술을 녹취하여 국안을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낭독하는 등 피고인에게 되풀이하여 피고인의 공술내용과 동일함을 다짐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창령추단일기》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철저하다. 먼저 이말손의 상변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추문 및 면질하고, 이흔이 말손의 상변 취지와 다르고 또한 주도자에 대해서도 다른 공술을 하면 그 공술에서 언급된 연루자도 체포하고, 피고인 및 연루자에게 이흔의 공술을 낭독하는 등 진상 규명에 힘을 썼다. 그 반면, 피고인 및 연루자의 공술만을 믿지 않고 공술자의 태도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언질을 얻었다. 예를 들면 이석손에 대한 제2회 추문에서 추관 이계남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계남이 말하기를, “무릇 피고인은 원고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으면 가히 범죄의 정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늙은이는 겁을 먹고 묻는 바에 따라 그대로 승복하니, 정상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⁴⁷⁾

원고(이 사건에서는 이말손)가 공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언급하고, 그것이 과연 진실이야 범죄의 진상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이석손처럼 묻는 대로 승복하면 犯情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석손의 공술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원고가 말하지 않는 것(元告不言)”에는 원고가 공술하지 않는 정보 즉 범인밖에 알 수 없는 정보인 소위 ‘秘密의 暴露’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의로 허구 사실을 들어 공술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공술자의 공술내용 등 기타 증빙 내용에 비추어 각 피고인 및 연루인의 공술을 녹취하였다. 이러한 심문방법은 《周禮》 秋官 小司寇에서 말하는 ‘五聽’을 모범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오청은 즉 ① 辭聽, ② 色聽,

47) 李季男曰, “凡被告者, 與元告不言而同, 可謂得情矣. 此老畏劫, 隨所問服之, 不可謂得情矣”(《新昌令推斷日記》).

③ 氣聽, ④ 耳聽, ⑤ 目聽을 말하는데, 鄭玄의 주에 의하면 ① 그 나오는 말을 살피고 바르지 않으면 공술이 번잡스럽다(“觀其出言, 不直則煩”), ② 그 안색을 살피고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진다(“觀其顏色, 不直則赧”), ③ 그 숨쉬는 것을 살피고 바르지 않으면 헐떡인다(“觀其氣息, 不直則喘”), ④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살피고 바르지 않으면 듣는 반응이 미혹된다(“觀其聽聆, 不直則惑”), ⑤ 그 시선을 살피고 바르지 않으면 흐릿하다(“觀其眸子視, 不直則眊”).⁴⁸⁾ 신창령 역모사건에서 추관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언동을 살펴 심증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틀 동안 계속된 신창령 역모사건의 추국은 밤을 새워 진행되었다. 신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의 배후에 고관들이 관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신창령 역모사건의 추국 내용은 방대하여 여기서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할 수 없다. 그러나 추문의 순서와 신문의 치밀성 및 신중성을 폐력하기 위하여 약간 장황하나마 이하 쟁점을 요약하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推鞫의 順序와 訊問上의 爭點

이말손의 상변이 있었던 10월 28일, 왕은 즉시 추관들을 경회문에 소집하여 조옥을 열었다. 피고인 이석손·흔 부자, 이윤, 이복중도 모두 체포되어 조옥 장소에 끌려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석손, 이흔, 이윤, 이복중 모두 종반 출신이다.

여기서 이말손의 상변 내용 중 쟁점이 된 사실의 요점(a)~(g)을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48) 《周禮注疏》 秋官 小司寇

- (a) 이석손이 이말손을 불러 매일같이 “박영문, 황맹현, 심정, 이공우, 윤순, 황형, 강윤희, 이이 등과 더불어 서산에서 돼지 사냥을 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말하였다.
- (b) 어느 날, 이석손이 이말손에게 원종공신에 들어갔는지 물으므로 안 들어갔다고 답하니, 석손은 성희안이 박정하다고 말하였다.
- (c) 10월 24일, 이흔이 이말손에게 “동지 다음날 아침에 삼공을 사살하고, 삼공의 제거를 알리는 봉화가 오르면 궁궐 밖에 집결하여 국왕을 폐위시키고 완원군을 왕으로 세우도록 박영문과 모의하였다.”라고 밀하였다.
- (d) 10월 27일, 이석손이 황맹현 및 윤순 등과 함께 이복중 집에 있다고 들어서 가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 (e) 이말손은 그대로 집에 돌아가 이석손에게 서간을 보냈는데, 석손은 회답하지 않고 다만 28일에 다시 오라고 답하였다.
- (f) 10월 28일 새벽에 이말손이 이석손에게 楊州에 있는 妻母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니, 석손이 “자네(말손) 이름을 이미 써 놓았고, 날이 촉박하니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 (g) 이석손이 “복이 없다. 완원군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하였다.

■ 이석손에 대한 추문(제1회)

조옥은 먼저 이석손에 대한 추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말손의 상변 내용에서는 석손이 이 역모사건의 가장 유력한 핵심인물처럼 지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평문

석손은 (a)에 대하여 윤순도 박영문도 모른다고 하고, (d)에 대해서는 이복중 집에서 이이 · 황맹현 · 이윤 등과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으며, (e)에 대하여 말손이 보낸 서간을 받았으나 석손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애완동물(달구)을 돌려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생각하여 “달구는 다른 곳에 있지만 꼭 돌려주겠다.”라고 답장을 보냈을 뿐이라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석손이 똑바로 공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1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c)를 부인하였다.

■ 이흔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이흔은 (a)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병으로 다리가 절뚝거려서 외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이석손의 매를 서산에서 놓았을 뿐이라고 하고, (c)에 대해서는 이말손과 안 만난 지 이미 두 달이 되었다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석손이 돼지 사냥에 대하여 바로 공술하였는데 흔은 숨진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1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c)를 부인하였다(오히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공술을 번복하였다).

■ 이말손과 이석손을 면질

이석손은 (b)의 원종공신의 일은 말한 것 같기도 하다고 인정하였고, (f) 중 이말손의 이름을 이미 써 놓았다고 말한 부분을 부인하고 사냥 날이 촉박하니 양주로 가지 밀라고 말한 부분은 인정하였으며, (g)를 부인하였다.

말손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공술하였다.

(h) 이석손은 윤순을 집에 부르고 항상 과녁을 쏘고 있었다.

(i) 박영문이 심정·윤순·황맹현 등과 함께 恭陵에 갔을 때, 이석손이 길에서 술을 대접하였다.

석손이 (a)에 대하여 박영문의 이름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h)에 대해서는 윤순이 황맹현·이복중·이윤 등과 지난 2월과 윤9월에 한 번씩 집에서 활을 쏘았다고 하며, 윤순을 모른다고 한 제1회 추문의 공술을 번복하였다. (i)에

대하여 윤순이 공릉 香使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흔이 술을 가지고 마중 나갔다고 공술하였다.

■ 이흔에 대한 추문(제2회)

이흔은 (i)에 대하여 윤순이 공릉 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윤이 大慈山 아래서 매를 놓아 윤순을 맞이하자고 하였으므로 함께 갔다고 공술하였다.

■ 이말손과 이흔을 면질 및 이흔에 대한 추문(제3회)

이흔은 (c)에 대하여 10월 24일에는 삼촌 숙부가 돌아갔기 때문에 베를 가지고 護喪하고 있었다고 공술하였다.

○ 이흔에 대한 평문

추관은 혼이 제1회 추문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외출하지 못하였다고 공술하였는데도 서산이나 대자산 아래로 사냥하러 간 점을 헐문하였으나 혼은 대답하지 않았다.

또 추관이 (a)와 관련하여 혼의 집에 드나든 재상을 물으니, 혼은 윤9월에 윤순과 황맹현이 집 앞에 와서 두 번 과적을 쏘았다고 하고, (d)에 대해서는 이복 중 집에 가지 않았다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면질하였을 때 이말손은 모의의 일과 혼의 발언을 명백히 공술하였는데 혼은 숨진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 형문 2차

혼은 제1회 추문 (c) 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공술에 대하여 말손과 이석손이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서 그렇게 밀하였다고 변명하였다.

흔이 신장 3대를 받자 바로 밀하겠다고 하였다. 그 공술을 요약하면 다음 (ㄱ)~(ㅂ)과 같다.

(ㄱ) 윤9월 보름에 황맹현이 서리를 시켜 혼을 집에 부르기에 갔더니, 이복 중 · 이윤 · 이이 ·呂振誠(여진성) 등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고, 혼에게 술을

대접한 뒤에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였다.

(ㄴ) 그 이튿날 아침에 황맹현이 종을 시켜 혼을 부르기에 갔더니, 이복중이 맹현과 바둑을 두고 있었고, 윤순의 조카, 황맹현의 아우 및 이윤도 모였다. 맹현이 혼에게 “좀 서로 약속할 일이 있는데, 자네(이흔)도 따르겠는가? 복중·이윤과도 이미 약속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또, 맹현이 “10월 11일에 삼공이 궁궐에 나갈 때 그들을 사살하도록 이미 윤순과 약속하였다. 이 일은 남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ㄷ) 그 뒤 어느 날, 이윤이 避接 집으로 혼을 부르기에 갔더니, 황맹현과 이복중이 있었다. 맹현은 “나중에 내가 부르면 丑時(오전 1시부터 3시) 전에 여기에 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 “동네와 성내 사람에게는 白岳山 중턱에서 오른 봉화를 보면 즉시 鐘樓와 水閣 아래 넷가에 모이도록 이미 약속해 놓았으니 자네들은 동네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혼은 이를 승낙하여 집에 돌아갔다.

(ㄹ) 10월 11일 丑時에 황맹현이 종을 시켜 이흔을 부르기에 혼이 黑圜領을 입고 갔더니, 맹현이 흑단령을 입고 온 것에 성났다. 이복중·이윤은 철럭(帖裏) 차림에 활을 가지고 이미 와 있었다.

(ㅁ) 잠시 후, 윤순이 圜領 차림으로 와서 “오늘은 사정이 있어 舉事할 수 없으니 10월 21일로 다시 약속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ㅂ) 이윤은 “靖國 때 정성을 다하여 수종하니 靖國功臣에 들어갈 만하였는데, 겨우 원종공신 1등이 되어 당상관이 되었으나 또 도로 빼앗겨 버렸다.”라고 늘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이복중은 “그 때 공신을 선정한 자들이 모두 짐승 같은 애들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이석손에게 말하였더니, 석손은 매우 놀라며, 이후 늘 혼을 경계하여 자주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윤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이윤은 (i)에 대하여 이흔과 富山守의 사위와 더불어 매를 놓았을 뿐이라고 하고, (ㄴ) 및 (ㄹ)에 대해서는 27일에 이석손·이이·황맹현과 이복중 집에서 만나 술을 먹고 바둑을 두었을 뿐이라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윤이 황맹현 등과 모의한 사실을 흔이 일일이 공술하였는데도 윤은 숨진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1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ㄴ) 및 (ㄹ)을 부인하였다.

■ 이복중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이복중은 (d)에 대하여 27일에 가벼운 병을 앓아 집에 있었고, 이이·이석손·황맹현 등이 집에 와서 바둑을 두었을 뿐이라고 하고, (ㄹ)에 대해서는 윤9월 26일에 妻母의 葬事로 충주에 갔다가 10월 19일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복중이 황맹현 등과 모의한 사실을 이흔이 일일이 공술하였는데도 복중은 숨진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1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ㄹ)을 부인하였다.

■ 이석손에 대한 추문(제2회)

○평문

추관이 이석손에게 이흔의 공술내용을 낭독하였다.

석손은 (f) 중 이말손의 이름을 이미 써 놓았다고 말한 것을 다시 부인하였고, 양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을 다시 인정하였다. (g)에 대하여 제2회 추문에서 는 부인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인정하였다. (d)에 대해서는 27일에 흔과 함께

이복중 집에 갔는데, 황맹현이 바둑을 두면서 “어느 날 衛日에 이이·윤순 및 그의 조카들과 더불어 사격훈련을 하여 군사를 갖추어 병조 參知 李公遇를 설득할 수 있으면 일이 어찌 성공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자, 이윤은 최근 자식이 죽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중·이이는 일을 성공시키려면 늦출 수 없다고 하면서 석손과 말손에게 이름을 쓰라고 말하였다. 맹현이 윤순·黃衡도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석손이 刑杖을 무서워하여 묻는 대로 승복하므로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윤에 대한 추문(제2회)

○평문

추관은 이윤이 황맹현 등과 모의한 사실을 이흔이 일일이 공술하였는데도 윤은 숨긴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2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ㄴ) 및 (ㄹ)을 다시 부인하였다.

■ 이복중에 대한 추문(제2회)

○평문

추관은 이복중이 황맹현 등과 모의한 사실을 이흔이 일일이 공술하였는데도 복중은 숨긴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2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ㄴ) 및 (ㄹ)을 부인하였다.

■ 황맹현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추관이 황맹현에게 이흔의 공술내용을 낭독하였다.

맹현은 (ㄱ) 사실 중 맹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부분 및 이흔에게

술을 대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맹현 집이 9월부터 역질이 발생하여서 술을 빚지 않았고, 맹현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술자리를 차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ㄱ), (ㄴ) 및 (ㄹ)에서 종 및 서리를 시켜 혼을 집에 불렀다는 부분은 종과 서리를 추문하면 거짓이 밝혀진다고 하고, (d)에 대하여 27일에 이복증 집에 갔는데, 이이·이석손·이윤 등과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갔다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황맹현이 윤순 등과 모의한 사실을 혼이 일일이 공술하였는데도 맹현은 숨긴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형문 1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혼의 공술을 모두 부인하고, 모의하였다는 것도 부인하였다.

■ 황맹현과 이혼을 면질

이혼은 황맹현이 제1회 추문에서 (ㄱ)에 대하여 9월부터 역질이 발생하였다 고 하였으나 8월에 역질이 발생하고 9월에는 이미 끝났으니 거짓이라고 반론하였다.

한편, 맹현은 (ㄹ) 및 (ㅁ)에 대하여 윤순은 都摠管이므로 만약 그가 11일에 入直하였다면 혼의 공술내용은 거짓이 된다고 하고, 또한 11일 丑時에 맹현 집에 집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11일이 관아가 임시 휴무한 날이었음을 지적 하며, 휴무일 새벽에 집합하였다는 내용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론하였다.

혼은 (ㄴ) 중 맹현이 이 일을 처자식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음을 다시 공술하였다.

추관은 혼의 말이 부실하고 앞의 공술과 다르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조옥 신문은 밤을 새워서 계속 이루어지며, 날이 29일 丑時가 되었다.

■ 여진성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여진성은 (ㄱ)에 대하여 을 가을에 두 번 황맹현 집에 갔으나 그 자리에 이흔은 없었고, 맹현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맹현이 다른 사람과 모의하였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공술하였다.

■ 여진성과 이흔을 면질

여진성이 (ㄱ)을 다시 부인하였다.

이흔이 황맹현 집에서 혼과 여진성이 앉아 있었던 자리, 그 때 쓴 술잔 및 나온 안주에 대하여 상세히 공술하자, 진성이 (ㄱ) 중 맹현 집에서 한 번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혼이 함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다.

■ 윤순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윤순은 (ㅁ)에 대하여 황맹현의 집에 안 간 지 오래되었고, 10일 저녁에 이윤의 죽은 자식의 조문을 갔을 때, 맹현을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였으나 모의한 일은 없고, 일몰 때 각각 귀가하였으며, 11일 새벽에도 맹현 집에 가지 않았다고 공술하였다.

■ 이이에 대한 추문(제1회)

○평문

이이는 윤9월과 10월에 황맹현 집에 두 차례 갔는데, 禹師昌 이외에 본 사람이 없고, (d)에 대하여 모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공술하였다.

■ 이흔에 대한 추문(제4회)

○평문

이흔은 (ㅁ)에 대하여 윤순은 11일이 입직한 날이었으나 틀림없이 直領 차림

으로 말을 탄 모습을 황맹현 집 앞 길거리에서 보았다고 공술하였다.

추관은 혼의 공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 형문 3차

흔이 신장 6대를 받자, 자신이 수모자라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공술을 하였다.

(八) 윤9월 27일에 이윤이 邂接 집에서 불러 혼에게 “모의의 일을 종들에게 알게 할 수 없으니, 자네(흔)가 중간에서 왕래하여 여러 곳에 일려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므로 혼은 그의 말을 따라 康允禧(강윤희) 집에 갔는데 윤희와 崔龜壽(최귀수)는 바둑을 두고 있었다. 혼은 윤희에게 이윤이 윤희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였더니, 윤희는 지금 바로 갈 수 없다고 하므로 혼은 이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윤은 그의 종을 시켜 다시 윤희에게 만나기를 청하니 윤희가 바로 왔다. 이때 이미 저녁 먹을 무렵이었다. 혼이 이석손·이윤·강윤희 등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윤이 윤희에게 같이 돼지 사냥을 가겠냐고 물었다. 윤희가 수긍하니, 윤은 “실은 돼지 사냥이 아니라, 10월 11일에 삼공이 조참하려 궁궐에 나갈 때 그들을 사살한 후에 왕자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일이 성취되면 공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윤희는 事勢가 확실하면 따르겠다고 하고, 또 최귀수가 자급이 강등된 것을 들 억울해 한다고 말하였다. 윤은 귀수를 불렀고, 귀수도 수종한다고 답하였다.

■ 이흔과 이윤을 면질

이흔이 (ㅂ)을 다시 공술하였다.

이윤은 혼이 돼지를 사냥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었을 뿐이라고 반론하였다.

■ 이복중과 이흔을 면질

이복중은 (ㄹ)에 대하여 妻母의 葬事로 윤9월 26일에 말미를 받아 충주에 갔

다가 10월 18일에 서울로 돌아오고 20일에 숙배하였으므로 그 사이는 서울에 없었다고 공술하였다.

■ 강윤희에 대한 추문(제1회)

○ 평문

강윤희는 (ㅅ)에 대하여 10월 18일에 이석손이 윤희를 부르기에 이윤과 함께 가서 산돼지 고기를 먹고 사냥 이야기를 하였을 뿐, 다른 잡담은 없었다고 하고, 그 자리에 최귀수와 이복중은 없었다고 공술하였다.

■ 이석손에 대한 추문(제3회)

○ 평문

이석손은 (ㅅ)에 대하여 10월 19일에 이윤과 강윤희 등을 집에 불러 산돼지 고기를 먹고 사냥 이야기를 하였을 뿐, 다른 잡담은 없었다고 하고, 최귀수는 아예 부르지 않았고, 이복중은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고 공술하였다.

■ 이흔과 이석손을 면질

이흔이 역모사실을 아버지 석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공술하자, 석손이 이를 부인하였다.

■ 이흔과 이윤을 면질 및 이윤에 대한 추문(제3회)

추관은 이윤이 모의한 사실을 이흔이 윤의 말에 따랐다고 일일이 공술하였는데도 윤은 숨진다고 하여 왕에게 형신을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 형문 3차

신장 30대를 받았으나 (ㄴ), (ㄷ) 및 (ㄹ)을 다시 부인하였다.

■ 추관이 지금까지 공술내용을 총괄하며, 의문점이 많으나 이흔이 그의 어머니가 면천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스스로 말을 만들었을 수 있다

고 보고, 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재상을 석방하도록 왕에게 청구하고, 재가를 받았다.

■ 이흔에 대한 추문(제5회)

○ 평문

이흔은 공술내용에서 앞뒤가 엇갈린 부분은 뒤의 공술 (ㄱ)~(ㅅ)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 이흔과 이말손을 면질

이흔은 (c) 중 혼이 박영문과 모의하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이윤·이복중의 이름을 말하였을 뿐, 박영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말손은 상변할 때 급해서 (a)와 혼동하여 말한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 최귀수에 대한 추문(제1회)

최귀수는 (ㅅ)에서 이윤 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공술하였다.

■ 이흔에 대한 추문(제6회)

이흔의 공술내용 중 앞과 뒤가 엇갈린 점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형신을 청구하였다.

○ 형문 4차

신장 30대를 받고 혼은 황맹현이 윤순과 모의하였다는 (ㄴ)은 거짓이고, 이윤이 혼에게 “모의의 일은 이미 내(이윤)가 이복중에게 전하였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자네(흔)가 전하라.”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또, 이말손이 상변한 (o)는 사실이라고 공술하였다.

3) 推官에 의한 供述 總括과 國王의 裁可

추관은 피고인 및 연루자의 공술이 거의 귀일되었다고 판단하면 국왕에게 추문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였다. 먼저 피고인에 관한 書啓로서 죄를 승복한 자가 누구이고 首罪(주도자)가 누구인지, 각 피고인에 대한 형문화수, 계속 형문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사건 연루자 16명에 대한 서계를 올렸고, 모두 석방하도록 왕에게서 재가를 받았다. 마지막에 刑問度數 書啓를 올렸다. 서계의 서식은 알 수 없으나, 이흔이 4차, 이윤이 3차, 이복중이 2차, 이석손이 1차 등으로 형문화수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관의 서계를 받아 국왕은 이흔의 제6회 추문의 공술을 인용하며, “이윤이 모의의 일을 이미 스스로 이복중에게 말하였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혼이 말하도록 시켰다면 윤이 수죄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시 혼에 대하여 추문하고 윤 및 복중과 면질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추관은 혼의 공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윤이 수죄라고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윤 및 복중은 이미 혼과 대질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승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왕은 이를 듣고 피고인을 조율하도록 전교를 내렸는데, 혼은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이석손은 모의에 관여한 죄로 논하며, 윤과 복중도 죄를 헤아려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신복의 역모사건 때 논상한 일에 따라 논상 해당자와 하사할 물품에 대하여 초안을 例示하도록 명하였다.

《신창령추단일기》 및 이것에 해당되는 《중종실록》 기사에는 조율을 파한다는 국왕의 선언 등이 있으나 아마도 조율을 지시하는 것으로 피고인 및 연루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照律과 量刑判斷

照律은 추국을 통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摘示하여 정상자량 등 양형판단의 전제를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왕의 지시를 받고 추관

이 왕에게 조율의 서계를 올렸다.

신창령 이흔은 《경국대전》 추단조의 “무릇 난언죄 중 만약 임금을 거슬러 모습과 이 치로 극히 심한 경우는 첨형에 처하고, 가산을 모두 몰수한다.”에 해당됩니다.

의산령 이윤은 사죄에서 1등을 감하여 장100 유3000리에 처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합니다.⁴⁹⁾

추관은 이흔에 대해서 《경국대전》 推斷條⁵⁰⁾의 “임금을 情·理⁵¹⁾로 극히 심하게 난언한 죄”로 참형으로 논하고, 혼의 가산을 판에 몰수하며, 이윤에 대해서는 사죄에서 1등을 감하여 장100 유3000리에 처하여 고신을 모두 추탈하도록 조율하였다.

추관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의산령 이윤은 승복하지 않았으니, 이유청 등의 예에 의합니다.

영정수 이복중의 죄는 의산령 이윤보다 가벼우니, 장100 원방부처에 처합니다.

정송수 이석손은 역모에 관여하였다면 그 죄는 아들 이흔과 같습니다. 그러나 석손은 미열하여 말도 어수선하고 어리석고 둔하여 무식한 자이니, 단지 부처에만 처할 것이 어떻습니까? 또 그의 아들 이흔이 진실로 역모를 범하였다면 그 아버지는 연좌하여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창령 이흔은 이미 난언죄로 논단되었으며,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정송수 이석손은 역모에 관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늙고 둔한 자이므로 그 죄는 또한 의산령 이윤보다 가벼운 것 같으니, 성상의 재결을 청합니다.⁵²⁾

49) “新昌令訴，大典推斷條云，‘凡亂言若干犯於上，情理切害者斬，籍沒家產。’義山令，死罪減一等，決杖一百流三千里，告身盡行追奪”(《新昌令推斷日記》)。

50) 凡亂言者，啓聞推處，杖一百流三千里。若干犯於上，情理切害者斬，籍沒家產。誣告者反坐。知而不告者，各減一等(《經國大典》卷5 刑典 推斷)。

51) 이치를 의미하는 ‘理’와 마음·모습을 의미하는 ‘情’은 ‘天’(자연), ‘人’(주관), ‘物’(객관·구체), ‘事’(객관·추상)의 네 가지 이념으로 세분된다. 그 중에서도 자연의 객관적 보편법칙인 天理와 인간의 감정인 人情의 요소는 중국 율령의 근본이념으로서 지향되었다[金池洙, 『傳統中國法의 精神—情·理·法의 中庸調和—』(全南大學校出版部, 2005), 63-73 및 141-145면].

추관은 이윤을 장100 유3000리에 처한 이유에 대하여 윤이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청 등의 예에 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유청은 辛服義역묘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끝까지 죄를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종 3년(1508) 12월에 康津으로 유배되었다.⁵³⁾ 이윤도 이 예에 따라 유배하도록 논죄한 것이다.

한편, 이복중에 대해서는 죄가 이윤보다 가볍다고 보고 장100 원방부처⁵⁴⁾로 논죄하였다. 이훈의 아버지 석손은 역모에 관여하였으므로 올에 따라 논죄하면 혼과 죄가 같으나, 석손은 말도 어수선하고 미숙한 자이므로 제대로 역모에 관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죄는 이윤의 次律로 보고 단지 부처에 처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하여 왕은 다음과 같이 진교를 내렸다.

왕이 전교를 내리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의산령 이윤이 주모자인 것 같은데, 신창령 이훈의 죄는 대역 뜻지 않다. 대역을 범하면 《선원록》에서 이름을 삭제하니, 혼도 삭제하여야 마땅하겠다. 의산령 이윤은 장형을 집행한 후 바다가 있는 외변(해외)에 유배하여라. 정승수 이석손은 역모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더라도 역시 장형을 집행한 후 외방에

52) “義山不服，故依李惟清等例。永貞守罪，下於義山，決杖一百遠方付處。貞松守，預謀則其罪與子同。守迷劣，言語錯亂，愚鈍茫昧者，只付處何如？且其子眞謀逆，則其父延坐當死，新昌令，既以亂言論斷。臣等意貞松無預謀顯然之事，而老鈍者，其罪又次於義山令，請取稟”(《新昌令推斷日記》)。

53) 《中宗實錄》 3年(1508) 12月 丙寅。

54)付處는 양반계층을 서울 밖 일정한 지역으로留住하게 하는 것인데, 이를 流刑의 일종 또는 광의의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徐壹敎, 앞의 책, 152면; 池哲瑚, 「朝鮮前期의 流刑」, 『法史學研究』 8(韓國法史學會, 1985), 133-134면]. 이 견해의 근거는 광해군 9년(1616) 12월에 왕이 “付處與圍籬，同是流配也。”라고 말하고 있는 점인데, 이 기사는 광해군의 大妃를 폐하는 것을 반대하여 같은 해 11월에付處된 영의정 奇自獻에 대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합동으로 “우리안치도 가벼운데 어찌 부처로 그칠 수 있겠는가(圍籬亦末，豈可付處而止哉)”라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거듭 아뢴 후에 왕이 말한 내용이다. 왕은 계속하여 “不須仍論，休煩可矣.”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신료들이 짐작하게 기자현을 업별에 처하도록 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에서 나온 말이지, 왕이 부처 및 우리안치를 유형과 同視하였다고 읽는 것은 曲解이다. 오히려 죄수를 거주지에서 단순히 추방하는 유형과 달리 부처는 해당 양반계층을 王京인 서울에서 추방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 처분으로 보는 견해[矢木毅, 「朝鮮初期の徒流刑について」, 『前近代中國の刑罰』(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480-482면]가 보다 설득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정수 이복중도 이와 같이 하여라. 신창령 이흔에게 만약 동생이 있으면 나의 생각으로는 역시 외방에 부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⁵⁵⁾

왕은 아직 이윤이 역모의 주도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흔에 대해서도 大逆罪 못지않은 중죄라고 논단하였다. 대역죄인 경우는 《璿源錄》에서 除名하므로 혼의 이름도 《선원록》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윤에 대해서는 장형을 집행한 후에 바다가 있는 외변(海外)으로 유배 보내도록 명하고, 이석손·이복중은 장형 집행 후 각각 외방부처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 및 연루자의 공술 내용의 개요는 앞의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사건을 상변한 이말손의 고발에서는 이석손을 주모자 중의 하나로 보고, 이흔, 이윤, 이복중 등을 수종자로 보고 있다. 한편, 이흔은 제3회 신문에서 황맹현이 사건 주모자라고 말하고, 이윤, 이복중, 윤순 등이 수종자라고 공술하였다. 그 후 이흔은 제4회 신문에서 자신이 주모자라고 자백하였는데, 이윤이 최귀수 등을 권유하는 등 공모자를 모집하고 있었다고 공술하였다. 그러나 이윤 및 이복중은 이를 부인하고, 이윤은 3차, 이복중은 2차 형문을 받아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흔이 주모자라는 공술은 다른 피고인 및 사건 연루자에서 나오지 않았다. 즉 이흔이 사건 주모자라는 사실은 혼 스스로의 자복만이 유일한 증거였다. 피고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거꾸로 말하면 피고인 본인의 자백밖에 증거가 없어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범죄 심리의 방침이었고, 자백을 하지 않아도 강도 높이 유죄 추정을 받은 피고인은 형을 감경하여 결국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가 아니라, 이유청의 처벌사례를 원용한 것처럼 “의심스러울 때는 형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왕에게 계문”이라는 방법으로

55) 傳曰, “予意義山爲謀首, 而新昌之罪, 不下大逆. 大逆則削《璿源錄》, 此亦宜若削述. 義山令, 亦宜決杖流海外. 貞松守, 雖謂之預謀可也, 亦宜決杖外方付處. 永貞守, 亦如之. 新昌令同生若有, 則予意亦宜外方付處”(《新昌令推斷日記》).

처리되었다. 여기에 자백을 중시한 당시 범죄사건 신문방법의 한계가 보인다. 이 사건의 신문결과는 나중에 대간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4장에서 언급한다.

한편, 왕은 緣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흔에게 동생이 있으면 외방부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죄하였다. 그러나 신료들은 혼의 동생을 연좌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추관이)아뢰기를, “이미 신창령 이흔을 난언죄로 처단하였는데 그 동생을 또 논죄한다면 이는 연좌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가볍게 논하였는데 연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종친은 빈궁한 사람들인데, 부처에 처하면 짚주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창령 이흔은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데, 허물며 그의 아우에 대하여 알리라. 신창령 이흔의 죄를 가볍게 논한 것은 성상의 지극한 ‘인홀지도’인데, 그의 동생을 연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⁵⁶⁾

그들의 반대 이유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이흔은 이미 감경하여 논죄되었는데 혼의 동생만 그대로 연좌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종친들이 가난하고 궁색한 사람들인데 혼의 동생들을 부처에 처하면 틀림없이 짚주린다는 것이다. 왕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연좌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추관들은 이흔의 죄가 ‘聖上仁恤之道’로 인하여 감경되었다고 한다. 혼에 대한 추관들의 조율은 ‘난언죄로 참형’이었는데 왕이 혼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왕이 혼에 대하여 대역죄 못지않은 중죄라고 지적한 부분에 주목한다.

무릇 모반 및 대역은 단지 공모한 경우도 수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에 처한다.

56) 啓曰, “旣罪新昌以亂言, 而又罪其弟, 則是緣坐也. 元罪輕論, 而有緣坐不可也. 且其宗親等, 貧窮人也, 付處則飢餓丁寧. 新昌令不言其父, 況曉其弟乎. 新昌令之罪輕論, 聖上仁恤之道至矣, 而緣坐其弟, 為何如?”(《新昌令推斷日記》).

...⁵⁷⁾

『대명률』에 의하면, 모반·대역은 이를 공모만 하여도 수법과 종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능지처사에 처한 극히 중한 죄였다.⁵⁸⁾ 한편, 난언죄는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이다. 세상 및 왕에 대하여 불평하는 행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이를 모두 한결같이 『대명률』 모반대역조로 처단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朝鮮的 量刑感覺에서 규정되었다. 즉 난언을 이치와 犯狀의 경중에 따라 ① 『대명률』 모반·대역조에 해당하는 난언(능지처사), ② 모반·대역조를 적용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나 임금과 관계되고 이치와 정상이 극히 흉악한 난언(참형), ③ 이치와 정상이 흉악하지 않은 난언(장100 유3000리)으로 세분화하였다.⁵⁹⁾

왕은 이흔에 대하여 대역죄 끗지않은 중죄라고 지적하고 『선원록』에서 삭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므로 흔을 대역죄(능지처사)로 논하지 않고 추관의 조율대로 난언(참형)으로 논죄한 것을 ‘輕論’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5. 行刑 및 論賞

『신창령추단일기』에서는 죄수들에 대한 형 집행 기록이 간략하다. 단지 추관이 이흔에 대한 형을 城內에서 집행할 것을 계문한 기사가 실려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종실록』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조율로 형이 확정된 죄수

57) 凡謀反及大逆,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陵遲處死(『大明律』 卷18 刑律 賊盜 謀反大逆).

58) 明에서 陵遲處死는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이(陵遲) 대중 앞에서 죄수를 기둥에 묶어 놓고 칼로 조금씩 살을 베고 빼만 남긴 형벌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刑法』(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59), 153-171면 참조. 한편, 조선전기에서 능지처사는 車裂(轍)로 대체되어 집행되었다(徐壹敎, 앞의 책, 157-158면).

59) 趙志晚,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景仁文化社, 2007), 155-158면. 조선에서 난언 죄를 입법한 취지를 염두에 두면, 본문 ①의 법정형에 대한 조선적 양형감각으로 먼저 ③의 규정이 설정되고 ①과 ③의 절충, 즉 ③보다 범상이 중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적용할 죄로서 ②의 규정이 설정되면서 세 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新昌令 訴…斬
義山令 潤…杖100 流3000里
貞松守 錫孫…決杖 外方付處
永貞守 福重…決杖 外方付處
〈그림 3〉 罪囚名 및 刑名

와 그 형명을 들면 <그림 3>과 같다.

조옥이 끝난 이튿날인 10월 30일, 왕은 이윤·이석손·이복중을 나누어 배소로 보낼 때, 신복의 사건의 연루자가分配된 곳에 겹쳐 보내지 말라고 전교를 내

렸다.⁶⁰⁾ 각 죄수의 유배지가 어디였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산재된 기사에서 복 중은 金海府에 부처된 것 같다.⁶¹⁾ 복중의 아들 永花副守 星珠도 연좌되어 원 방으로 유배되었다.⁶²⁾ 윤은 海南縣으로 유배된 것 같은데, 중종 5년(1510) 12월에 付處로 형이 감경되었다.⁶³⁾

한편, 참형을 받은 이흔에 대해서는 11월 1일, 사형(一罪)을 받고 棗市⁶⁴⁾된 흔의 죄명을 모두가 모르니 죄명을 널리 게시하도록 사헌부에서 요청하였다. 왕은 흔이 승복한 문안을 사헌부에 보내도록 명하였다.⁶⁵⁾ 추관이 흔을 처형하였다고 직접 보고한 기사는 없으나 조옥이 끝난 이를 뒤까지는 처형되어 기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반인 아들 죄수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서 이름이 삭제될 수 있었다. 이흔은 《선원록》에서 삭제하도록 전교가 내려졌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11월 1일, 예조에서 흔·이석손·이복중·이윤을 《선원록》에서 削名할 것을 계품하자, 왕은 흔의 이름만 삭제하도록 전교하였다.⁶⁶⁾ 같은 달 4일, 의정부 舍人 閔愼이 삼공의 뜻을 전달하여 윤의 죄는 이복중의 죄와 차이가 있고 윤은 광폐하므로 윤 그리고 석손을 삭명하도록 계문하고, 왕은 좋다고 대답하였다.⁶⁷⁾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선원록》(奎8785)을 보니, 흔만 삭명되

60) 《中宗實錄》 4年(1509) 10月 戊午.

61) 《中宗實錄》 5年(1510) 12月 癸巳.

62) 《中宗實錄》 5年(1510) 8月 癸丑.

63) 《中宗實錄》 5年(1510) 12月 甲午.

64) 棗市는 市場에서 민중과 함께 죄수를 버린다는 뜻을 가진 형벌이고, 威嚇刑主義의 으로 일반 민중에 대한 鑑戒를 목적으로 하였다(徐壹教, 앞의 책, 159면).

65) 《中宗實錄》 4年(1509) 11月 己未.

66) 《中宗實錄》 4年(1509) 11月 己未.

67) 《中宗實錄》 4年(1509) 11月 壬戌.

고 나머지 세 명 모두 이름이 그대로 실려 있다.⁶⁸⁾

논상에 대하여 추관은 왕이 주로 추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로 삼은 것과 추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졸속하게 상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왕은 이미 전교를 통하여 논상 대상자를 지정한 것 같다. 성희안이 獨啓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희안이 독계하기를, “전교에서 특별히 신이 상변하였다고 언급하시니, 너무나 경황스럽습니다. 신의 죽인이 신에게 와서 일렀기 때문에 신이 아뢰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인데, 신이 어찌 홀로 후하게 상을 받겠습니까.”⁶⁹⁾

성희안은 왕이 전교에서 자신을 상변자로 지칭한 것에 놀랐고, 상을 받아야 할 자는 이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후하게 상을 받는 것을 사양하였다. 박원종이 말손에게 보상할 것을 계문하자, 왕은 凍天徹夜로 추국에 종사한 관리들에게 그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 있게 논상하고, 말손에 대해서는 벼슬을 특진(超資)하고 관에 물수한 이흔의 가산을 주며 특별히 段 1필과 술을 하사하였다.⁷⁰⁾ 말손의 벼슬이 令(정5품)에서 君(종2품)으로 승격된 것이 사료에서도 확인된다.⁷¹⁾ 또 왕은 사건 연루자로 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박영문을 특별히 불러 鹿皮 1장을 하사하고 “사태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옥에 구금한 것이다. 경의 고생이 심하였음은 안다[事大, 故不得已繫獄. 知卿勞甚].”라고 하면서 술을 내리고, 推官廳에도 술을 내려 추관들을 위로하였다.⁷²⁾

조옥에서 추관은 단순히 피고인 및 연루자에 대한 신문뿐만 아니라, 죄수에

68) 『朝鮮王朝璽源錄』, 535-555, 875면. 숙종대에 宗簿寺에서 작성된 이 『선원록』에는 이석순에게 적자녀가 없고 다만 침자(孝同, 孝篤, 孝信, 孝純)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9) 成希顥獨啓曰, “傳教別稱‘臣之告變云云’, 尤爲驚惶. 臣之族人來告于臣, 臣不可不啓, 臣何獨受厚賞”(『新昌令推斷日記』).

70) 『中宗實錄』 4年(1509) 10月 戊午.

71) 『中宗實錄』 8年(1513) 10月 辛酉.

72) 『中宗實錄』 4年(1509) 10月 丁巳.

대한 행형과 신료에 대한 논상에 이르기까지 조옥 전체에 관여하고 있었다. 조정의 핵심 신료로 구성되어 있었던 추관들에 대하여 왕이 후하게 상을 내리려고 한 것은 중종대 왕권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中宗代 逆謀事件과 王權

국왕을 폐위시키고 새로 왕을 세우려고 계획한 역모사건은 조선시대 건국 초기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 중에서 중종대는 역시 왕위를 친탈한 세조대 못지않게⁷³⁾ 크고 작은 역모·난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성종대부터 명종대 초까지 발생한 내란·역모 사건 등의 전말을 기록한 《續武定寶鑑》(古4250-14)⁷⁴⁾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중종대에 관한 관련 사건은 ① 원년(1506) 中宗反正, ② 2년(1507)에 일어난 이과 역모사건, ③ 3년(1508)에 일어난 신복의 역모사건, ④ 8년(1513)에 일어난 박영문·신윤무 모반사건 등이다. 박영문·신윤무 모반사건 이후는 결본이므로 원래 수록되어 있었던 사건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윤팅병 역모사건 등 수많은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사건기록은 《중종실록》의 해당 사건기록에 비하여 간략하므로 조옥 신문 때 작성된 사건 추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서명에서 ‘보감’이라고 하는 점에서 亂臣·逆臣 및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된 신료 및 그 후

73) 세조대 역모·난언사건의 발생원인과 세조의 대책에 대해서는 崔承熙, 「世祖代 王位의 취약성과 王權強化策」, 『朝鮮時代史學報』1(朝鮮時代史學會, 1997) 참조.

74) 명종 3년(1548) 10월에 편찬되고 광해군 11년(1619) 4월에 다시 간행되었다. 본 사료는 전체 8권 중 5권 2책까지 현전하는 雜本이다. 본래 조선 국초부터 晉宗代까지의 內亂外患의 전말을 기록한 《武定寶鑑》이 예종대에 편찬되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속무정보감》은 《무정보감》을 이어서 편찬된 것이다. 《속무정보감》은 『朝鮮史料叢刊』16(朝鮮史編修會, 1937)에서 영인되었다.

예의 처분 문제, 功臣에 대한 평가 등 정책 결정시에 인용하는 선례를 수록한 책인 것이 짐작된다. 또, 이 책의 간행에 대하여 명종 2년(1547)에 사간 尹仁恕가 다음과 같이 陳言하였다.

사간 윤인서가 말하기를, “역적의 추안은 외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조종조 때에도 《무정보감》이 있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그 예에 의해서 인출하여 널리 반포시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두 역모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사론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⁷⁵⁾

이 윤인서의 진언은 명종대에 《속무정보감》이 편찬·간행된 계기가 되었다. 그의 말을 통하여 조옥에서 역적을 추국하여 작성된 추안은 이를 외부인에게 보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정보감》이 편찬되었고, 그 속편을 널리 간행함으로써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폐악한 단서를 예방하도록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적의 추안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기록은 이미 제3장 제5절에서 이흔의 죄목을 공개하기 위하여 사헌부에 승복문안을 제시하였을 때도 등장하였다. “우리들도 혼이 어떤 죄로 참형·기시되었는지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新昌令訴, 以一罪論斷棄市, 而臣等未知其罪名. 在臣等, 尚未得知, 惡他人, 豈能知之].”라는 사헌부 관원의 말에는 조옥이 피고인 및 연루자의 체포부터 행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과 왕이 소집한 추관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참형된 혼의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데 이를 보는 민중은 그가 처형된 까닭을 모른다는 것은 조옥을 지휘한 국왕의 권위가 민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괴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폭정으로 국가 기반을 동요시킨 연산군을 폐위하고 ‘올바른 제자리로 되돌린’ 중종반정은 성희안·박원종·유순정 등의 주도 하에서 신윤무·박영문 등의 협력을 얻어 晉城大君(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 ‘쿠데타’였다. 따

75) 司諫尹仁恕曰, “逆賊推案, 外人不得見之。祖宗朝亦有《武定寶鑑》, 臣意以為依此印出, 使之廣布, 則愚夫愚婦皆得知之, 而邪論不起矣”(《明宗實錄》 2年(1547) 10月 戊午).

라서 만약 실패하였으면 그들 역시 ‘역모’의 낙인이 찍혀 조옥에서 추국되어 처형을 당하였을 것이다. 쿠데타는 성공하여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고, 이를 협력한 신료 117명은 공신으로 책록되었다.⁷⁶⁾ 그런 의미에서 ‘반정’과 ‘역모’는 바로 表裏一體였다.

쿠데타로 추대되어 왕위에 오른 중종의 왕권은 유교정치에 있어서 기본인 되는 명분·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매우 취약하였다.⁷⁷⁾ 중종의 정치개혁은 연산군대에 문란해진 국가 기강의 시정, 제도의 재정비⁷⁸⁾ 등으로 시작하고, 공신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명망이 있는 신진 사림파를 등용하는 등 전통적 명분의 회복과 因習·舊制의 혁거에 주력하였다. 특히 조광조가 주도한 성리학적 윤리질서의 전개와 학문체계의 보급으로 설명된다.⁷⁹⁾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이 격화되어 靖國의 僞勳 삭제 여부(전 공신 중 4분의 3을 차지하였음)를 결과적 계기로 己卯士禍가 일어났다.⁸⁰⁾

76) 정국공신 집단의 인적 관계에 관한 분석으로는 李秉然, 「朝鮮 中宗朝 靖國功臣의 性分과 動向」, 『大丘史學』 15 · 16(大丘史學會, 1978), 289-300면.

77) 明과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연산군의 爭位와 진성대군의 承襲에 관한 奏文 작성 및 사신 파견에서 반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金煥, 「朝鮮中期의 反正과 王權의 위상」, 『典農史論』 7(서울시립대학교국사학과, 2001), 360-361면].

78) 중종 8년(1513)에 편찬된 1차 『大典後續錄』의 斤正과 현준하는 『新續錄』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金煥, 「中宗代 法制度의 재정비와 『大典後續錄』의 편찬」, 『韓國史研究』 127(韓國史研究會, 2004).

79) 훈구파와 사림파를 서로 다른 사회계층으로 보는 시각, 즉 大地主인 훈구파에 대한 小地主인 사림파가 대두하였다고 보는 견해(李泰鎮·李樹建·李秉然)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鄭杜熙,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形成과 變遷-그 研究史의 成果와 課題-」, 『韓國社會發展史論』(一潮閣, 1992), 108-119면]. 이 주장에서는 성종·연산군대의 사림파를 분석하여 그들 대부분이 재지 중소지주 출신이 아니라 조선초기 주요 관료가문 출신이었음이 밝혀졌다[김용홍, 「조선전기 動舊·士林의 갈등과 그 政治思想의 含意」,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혜안, 2004), 361면 각주 3].

80)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에 수많은 알력이 있었다[金奭鎬, 「己卯士禍의 由來에 關する一考察」, 『青丘學叢』 20(青丘學會, 1935)]. 공신세력의 瓦解는 이미 중종 2년(1507) 柳子光의 竊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반정 당시 공로가 없음에도 1등공신이 된 유자광에 대한 비판은 반정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 후 박원종·성희안의 사망으로 인아혀 구심력이 상실되어 가면서, 같은 왕 8년(1513) 의정부 종 鄭莫介의 誣告로 박영문·신윤무 역모사건이 일어나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李秉然, 앞의 글, 300-313면). 같은 왕 10년(1515)에는 廢妃愼氏의 復位에 대하여 朴祥·金淨이 상소를 올려 朱子學의 名分論 및 義

『신창령추단일기』 중 원종공신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말손에 대하여 성희안이 박정하다고 이석손이 말한 것[제3장 제3절 제2항 말손의 상변(b)], 靖國 즉 反正 때 정성을 다하여 수중하므로 정국공신을 받을 만한데 원종공신 1등 밖에 되지 못하였다고 이윤이 말하고, 공신을 선정한 사람들이 모두 짐승 같다고 이복중이 말한 것[같은 항 이흔에 대한 제3회 추문(ㅂ)], 삼공이 궁궐에 나가는 길에서 그들을 살해한 후에 왕자군을 세우면 공신이 될 수 있다고 이윤이 말한 것[같은 항 흔에 대한 제4회 추문(ㅅ)]은 설사 그 공술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신 책록을 둘러싼 불만이 많았고,⁸¹⁾ 또한 지금은 억울하게 제대로 공신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형세만 갖추어지면 자신도 공신이 될 수 있다고 공신 자리를 노리는 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⁸²⁾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의 사례는 신창령 역모사건만이 아니다. 이과 역모사건은 공신이 되지 못하였던 이과가 錄功이 공평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박원종·유순정을 살해하고 甄城君을 추대하려고 도모한 사건이었고, 신복의 역모사건은 掌使 신복의의 처삼촌이 정국 때 중종의 私第 대문을 파수하여 크게 공을 올렸는데도 원종 1등밖에 되지 못하였다고 텔어놓은 불만에 따라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같은 불만을 가진 童清禮도 이에 가담한 사건이

理論을 들어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폐위를 주도한 박원종·유순정·성희안에 대한 탄핵까지 불이 붙었다. 그러나 대간들은 박상 등의 상소는 邪議로 규탄하여 오히려 박상 등이 처벌되었다.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 계열과 대간의 대립 상황에서 趙光祖가 正言이 되어 처벌을 주장한 대간을 비판하자, 대간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 후 박상 등은 용서되어 서용되었고, 조광조 일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김용흠, 앞의 글, 383-392면).

- 81) 정국공신의 내역을 보면, 중종반정을 首唱한 박원종·유순정·성희안과 친척·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종친(5면)·환관(6명)을 제외한 106명 중 62명(58.5%)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국공신 署賞은 建議된 직후부터 논의를 빚었다[金燉,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研究』(서울 대학교출판부, 1997), 109-110면].
- 82) 세조왕위의 부당성, 端宗 復位의 당위성이 당시 '사회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었던 세조대 역시 난연사건이 횡행하여 정치 불안정의 요소가 되었다. 단종이 사망하기 전에는 단종 복위와 관련된 내용, 사망 후에는 세조정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모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세조왕위의 명분·정통성 결여는 종친·공신·관료들의 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의식·무의식적으로 왕을 왕으로 보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崔承熙, 앞의 글, 19-23면).

었다. 공신이라는 ‘利權’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억울한 처우를 푸는 데 급급하고, 만약 쿠데타가 성공되면 폐위될 중종에 대한 恐懼心이 없다.

중종 5년(1510) 12월 왕이 宗戚을 추구한 추관을 불러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전일에 종척을 추구한 추관들을 불러 전교를 내리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공술에 연루된 자를 보니, 종척이 많다. 일반인도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종척이랴. ...”⁸³⁾

왕은 중종이 즉위한 이래의 역모사건에 연루된 자를 보니 종척이 많다고 하였다. 종척이 연루된 이유는 간단하다. 쿠데타를 일으켜 공신을 노리는 자는 종척 중 적당한 자를 추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반면에 종척 스스로도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고 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왕의 권위가 취약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중종은 잇따른 역모사건의 대책으로 親王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변한 자에게 후하게 報償하였다. 신창령 역모사건에서 이말손은 벼슬을 특진받고 관에서 몰수한 이흔의 가산을 받으며, 기타 왕에게서 물품을 하사받았다. 당시 난언을 상변한 자에게 상을 주는 식례는 없었다고 하므로⁸⁴⁾ 왕이 보상할 양을 선례에 구애받지 않고 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건을 상변하여 이익을 노리는자가 많았다. 중종 5년(1510) 6월에 沙川守가 武士 약 180명 및 약간의 文士와 결탁하여 같은 해 8월에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약속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상변한 유생 朴有齡이 伏誅된 사례,⁸⁵⁾ 허위 상변으로 조옥에서 친국하기에 이르게 한 私奴 吉山을 不待時斬에 처한 사례⁸⁶⁾ 등이 그러한 상황을

83) 召前日推鞫宗戚推官等, 傳曰, “予觀卽位以來, 事關宗社而辭連者, 宗戚居多. 凡人猶爲不可, 況宗戚乎. ...”(《中宗實錄》 5年(1510) 12月 癸巳).

84) 政院啓曰, “告亂言者賞賜之例, 考于『政院日記』則無之, 故以賞告亂臣之例數條以啓”(《中宗實錄》 17年(1522) 3月 壬申).

85) 《中宗實錄》 5年(1510) 6月 丁酉.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사노 길산 무고사건에서 金璫이 길산에 대한 부대시참을 주장한 후에 다음과 같이 진언하고 있다.

(대사헌)김당이 말하기를, “… 지극히 미천한 사람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재상을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공술을 보면 온갖 계교를 부려 간사하고 교활함이 심한데, 참으로 상을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저 작상이 지나치면 비록 사대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을 탐내는 마음을 갖게 되니, 작상이 적당한 연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복종합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정묘년의 이과, 무진년의 신복의, 기사년의 상산군, 신미년의 박유령 등의 사건이 해마다 혹은 해를 길러 발생하였습니다. 상격을 《경국대전》에 의하면 어찌 이렇게 되겠습니까.”⁸⁷⁾

김당은 “미천한 사람이 이익을 탐내어 온갖 계교를 부려 교활하게宰相을 해치려고 한 것은 상을 노리는 마음 때문이다. 爵賞이 적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익을 노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임금이 즉위한 이래 이과, 신복의, 상산군(이 말손), 박유령 등 역모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賞格을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건이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며, 적당한 논상 기준으로 《경국대전》 규정을 들었다.⁸⁸⁾

김당의 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신창령 역모사건의 상변자인 이말손에 대한 처우는 조정에서 많은 물의를 빚었다. 그 지탄은 논상 규모를 떠나 사건의 진상이 불투명한 채 이흔을 역모 주도자로 처단한 조옥 판결에도 미쳤다.

《중종실록》에는 신창령 역모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吏臣曰…”로 시작하

86) 《中宗實錄》 11年(1516) 11月 丁亥 및 庚寅.

87) 璞曰, “… 至賤之人, 不勝貪利之心, 欲致害宰相. 見其招辭, 則多般計較, 奸巧甚矣. 實邀賞之心, 使之也. 大抵爵賞過中, 則雖士大夫, 必生嗜利之心, 爵賞的當, 然後衆心服矣. 上之卽位以來, 丁卯年李顥, 戊辰年辛服義, 己巳年常山君, 辛未年朴有齡等事, 或逐年或間歲而出. 賞格若依《大典》, 則豈至於是”(《中宗實錄》 11年(1516) 11月 庚寅).

88) 《경국대전》 중 어떤 규정에 따라 보상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刑典 捕盜條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왕에게 변고할 정도로 중대한 죄를 강도 및 절도죄의 논상 규모에 비추어 어떻게 조정하는지 알 수 없다.

는 사관의 평가가 있다. 여기서는 이흔의 자복만 가지고 事實認定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⁸⁹⁾ 중종 7년(1512)에는 侍讀官 권별이 사관을 맡은 당시 추국에 대하여 이윤과 이복중은 무죄일 수도 있었으나(“恐涉於曖昧”) 당시 추관은 사건이 역모에 관한 것이므로 제대로 옳고 그름을 아뢰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⁹⁰⁾ 중종 11년(1516) 8월에는 參贊官 申鎬이 중종 즉위 이후 역모죄로 처단된 자가 많으나 판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고, 조옥에서 시행되는 형신은 일반 옥송과 달리 참기 어려우므로 誣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승정원일기》를 볼 기회가 있어 신창령사건을 읽었는데, 혼은 아예 큰일을 도모할 수 없는 용렬하고 유치한 小人이고, 鞫獄도 온당치 못하였다.”라고 당시 재판을 비판하였다. 이 비판에 대하여 사신은 이말손이 역모사건을 왕에게 고변하면 공로가 기록되는 것을 보고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見告變者錄功, 常爲之流涎”), 혼을 유인하여 망언을 말하게 만들어서 상변한 것이니,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나 김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간언한 신상은 평가하였다. 그 반면에 중종과 다시 추관들을 비판하였다.⁹¹⁾ 약 석 달 뒤에는 同知事 李繼孟이 당시 추관으로 종사한 정광필(추국 당시 知事) 스스로가 일찍이 사건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듣고, 후일에 이런 오판이 생기지 않도록 追悔할 것을 간언하였다. 韓效元도 자신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며, 그러면 小人으로 恩數를 바라는 자가 끊이지 않다고 하여 신중한 재판을 요구하였다. 왕은 “그때 내가 친국하지 않고 대신에게 맡겼고, 사실인정이 확정(獄成)된 후에 추안을 읽었으나 의심스러운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미 끝난 일이므로 뒤늦게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이흔의 죽친을 포함한 당시 연좌된 자를 모두 석방하도록 전교하였다.⁹²⁾ 중종 12년(1517) 2월에는 檢討官 尹自任이 근래 人心과 士習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공신에 그럴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

89) 《中宗實錄》 4年(1509) 10月 丁巳.

90) 《中宗實錄》 7年(1512) 7月 庚寅.

91) 《中宗實錄》 11年(1516) 8月 癸酉.

92) 《中宗實錄》 11年(1516) 12月 戊申.

한 사람이 뒤섞여 있어 功利가 사람을 그르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까닭 없는 녹공은 사습을 변질시킨다고 간언하였다. 侍讀官 조광조는 이말손의 상변이 석연치 않은 것도 공리를 바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꾀를 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⁹³⁾

반정의 공로자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린 靖國功臣이 훈구파를 놓고, 그 견제 책으로서 등용된 사림파는 반정 때의 위훈 삭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여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미약한 왕권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도 혹시 공신이 될 수 있다고 그 기회를 노리게 되고, 종반까지 역모사건 주도자로 처벌되었다. 또한 역모를 상변하면 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는 자도 나타났다. 『신창령추단일기』 및 신창령 사건에 관련된 『중종실록』 기사에서는 중종대 공신제도가 초래한 이러한 심각한 폐단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V. 맷음말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반정 때 공을 세운 자를 찬양하기 위하여 정국공신을 내렸으나, 그 선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자가 많았다. 왕권이 취약하였던 탓도 있어 그 불만은 적당한 종반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이 공신이 되려고 역모하는 자를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속무정보감』에 수록된 큰 사건 외에도 중종대에는 크고 작은 역모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신창령추단일기』는 종반의 역모를 종반이 상변한 사건의 추국기록이다.

『신창령추단일기』와 기타 당시 일어난 유사한 역모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조옥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중종대 조옥은 승정원에서 변고를 접수하고 즉시 왕에게 전달되었다. 왕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친문

93) 『中宗實錄』 12年(1517) 2月 王申.

할 것인지 대신에게 맡길 것인지 판단하여 전교를 내렸다. 추국에 참여한 인원과 피고인을 체포하는 인원에는 틀이 있었으나, 관원의 사정이나 체포하는자의 수·신분·성질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되었다. 특히 대간 관원이 반드시 추관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던 점은 조선후기 관계 사료에 나타난 추관 선정 규정과 차이를 보여준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례》의 오청을 모범으로 하면서 말로 묻는 평문과 형장을 가하는 형문이 실시되었고, 피고인의 공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는 당사자끼리 면질하였다. 신문을 받은 후 공술내용이 틀림없음을 공술자에게서 다짐받았다. 신문이 끝나면 추관이 사건을 총괄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죄목과 법정형을 적시하는 조율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백을 중시한 당시의 신문방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도 사건의 증거로 채용하거나, 피고인 본인이 끝까지 자백하지 않아도 추관에게서 강하게 협의를 받으면 형이 감경되어 처벌을 받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조옥이 종결된 수년 후에 대간들에 의하여 지탄되었다. 조율을 거쳐 왕의 양형 판단이 끝나면 죄수에 대한 행형과 공로자에 대한 논상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았다.

조선전기의 법은 《경국대전》과 《대전속록》·《대전후속록》과 같은 典錄이나 권의의 법인 受敎만이 아니다. 典錄에 실려 있지 않은 式例 및 定例가 있었다. 재판의 절차규정은 주로 식례로 정해져 있었음은 《육전조례》 등 조선후기의 사료를 보면 명백하다. 조선후기의 경우 관아에서 시행된 식례 및 정례를 기록한 몇 가지 사료가 존재하나, 조선전기의 경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동시대 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선후기 사료를 참조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여러 기록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추론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사료가 말하는 잡다한 정보 속에서 일반사안인지 예외사안인지 분별하면서 당시의 법전에 보이지 않는 정례들을 재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조선전기 조옥 실태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史料類

- 『新昌令推斷日記』(寶物 第261號). 國家記錄遺產(<http://www.memorykorea.go.kr>) 소재 사진
화상.
-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6.
- 『冲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19), 民族文化推進會, 1996.
- 『金吾憲錄』(『各司謄錄』72), 國史編纂委員會, 1994.
- 『六典條例』,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 『續武定寶鑑』(『朝鮮史料叢刊』16), 朝鮮史編修會, 1937.
- 『朝鮮王朝璿源錄』, 民昌文化社, 1992.
- 『推案及輞案』, 韓國國學文獻研究所 편, 亞細亞文化社, 1980.
- 『大明律講解』, 서울大學校奎章閣, 2001.
- 『經國大典』, 서울大學校奎章閣, 1997.

2. 研究書 및 研究論文 (가나다순)

- 金慶洙, 『朝鮮時代의 史官研究』, 國學資料院, 1998.
- _____, 「조선 전기 史官과 實錄 編纂에 대한 연구—現況과 課題」, 『史學研究』 62, 韓國史學會, 2001.
- 金 嵐,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朝鮮中期의 反正과 王權의 위상」, 『典農史論』 7, 서울시립대학교국사학과, 2001.
- _____, 「中宗代 法制度의 재정비와 『大典後續錄』의 편찬」, 『韓國史研究』 127, 韓國史研究會, 2004.
- 金夷鎬, 「己卯土禍の由來に關する一考察」, 『青丘學叢』 20, 青丘學會, 1935.
- 김용훈, 「조선전기 劍舊·士林의 갈등과 그 政治思想의 含意」,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 제의 형성』, 혜안, 2004.
- 金池洙, 『傳統 中國法의 精神一情·理·法의 中庸調和一』, 全南大學校出版部, 2005.
-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74.
- 朴榮圭, 「朝鮮中宗初에 있어서의 大臣과 臺諫의 對立」, 『論文集』 5, 慶北大學校, 1962.

- 박창진, 「中宗實錄을 통해서 본 政策參與機關의 權力關係研究」, 『韓國政治學會報』 31-2, 韓國政治學會, 1997.
- 徐壹敎, 『朝鮮王朝刑事制度의 研究』, 韓國法令編纂會, 1968.
- 矢木毅, 「朝鮮初期の徒流刑について」, 『前近代中國の刑罰』,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 _____, 「朝鮮黨爭史における官人の處分—賜死とその社會的インパクト—」, 『東アジアの死刑』,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8.
- 沈義基, 『韓國法制史講義』, 三英社, 1997.
- 延甲洙, 「『六典條例』解題」, 『六典條例』 上, 서울大學校奎章閣, 1999.
- 吳甲均, 「朝鮮朝 輄廳 運營에 대한 研究」, 『湖西文化研究』 3,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83.
- _____, 「朝鮮時代司法制度研究」, 三英社, 1995.
- 吳洙彰, 「『銀臺便攷』解題」, 『銀臺便攷』 上, 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 _____, 「『銀臺條例』解題」, 『兩銓便攷 銀臺條例』, 서울大學校奎章閣, 2000.
- 劉永玹, 「李朝刑事法理論의 展開」, 서울大學校 法學碩士學位論文, 1960.
- 李秉杰, 「朝鮮 中宗朝 靖國功臣의 性分과 動向」, 『大丘史學』 15 · 16, 大丘史學會, 1978.
- _____, 「朝鮮前期 畿湖土林派 研究」, 一潮閣, 1984.
- 李相憲, 「義禁府考」, 『法史學研究』 4, 韓國法史學會, 1977.
- 李棕浩 외, 「朝鮮王朝中宗代의 王權과 政治勢力의 動向」, 『論文集』 4, 馬山大學, 1982.
-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研究 刑法』,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59.
- 任相嬪,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 서울大學校法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 張鎮根, 「朝鮮時代의 調書인 供招의 作成方法과 搜查構造에 關하여(臨海君 琉의 逆謀事件을 中心으로)」, 『檢察』 110, 大檢察廳, 1999.
- 鄭肯植, 「『柳淵傳』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16세기 형사절차의 일례—」, 『人道主義의 刑事法과 刑事政策』, 又凡李壽成先生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星社, 2000.
- 鄭東根, 「反政期의 政治思想—中宗·仁祖反政을 中心으로—」, 『里門論叢』 7,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院友會, 1988.
- 鄭杜熙,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形成과 變遷—그 研究史의 成果와 課題—」, 『韓國社會

- 發展史論』, 一潮閣, 1992.
- 趙志晚,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景仁文化社, 2007.
- 池哲瑚「朝鮮前期의 流刑」, 『法史學研究』 8, 韓國法史學會, 1985.
- 崔承熙, 「世祖代 王位의 취약성과 王權強化策」, 『朝鮮時代史學報』 1, 朝鮮時代史學會, 1997.
- _____, 『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產業社, 2003.
- 韓治勳「麗末鮮初 巡軍研究－麗初 巡檢制에서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에까지 미침－」, 『震檀學報』 22, 震檀學會, 1961.

<Abstract>

An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the Conspiracy to Treason and the Royal Criminal Court Procedure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Studying *Sinchangnyeong Chudan Ilgi*

Tanaka, Toshimitsu*

Majority of conspiracies to treason occurred due to the high dissatisfaction with the selected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who had established a new regime through the coup d'etat was frail. Therefore, the person who had not been chosen as the meritorious retainer plotted the coup d'etat to be a new meritorious retainer. Jungjong King gave cordial awards to the people who reported conspiracy to treason plots that come one after another.

However, as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is weak, there wer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made false reports for the award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yal criminal court procedure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through studying *Sinchangnyeong Chudan Ilgi*. *Sinchangnyeong Chudan Ilgi* by Gwon Beol (1478~1548) is a record of interrogations of a conspiracy to treason case occurred from October 28th to 29th in the year of 1509.

The reason, background and the criminal court procedure of the *Sinchangnyeong* case

* Doctoral cours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clarified. This study also establishes that Jungjong King never attained a strong authority because the people who had not been chosen as meritorious retainers had a grudge against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of meritorious retainers.

[Key Words] Royal Criminal Court, Criminal Procedure, Authority of King, Meritorious Retainers, Gwon Beol

접수일 : 2010. 3.31, 심사일 : 2010. 4. 5~4.12, 게재확정일 : 2010. 4.16